23-1

2000

2000 인구주택총조사

종 합 시 행 계 획

2000. 7

통 계 청

목 차

Ⅰ. 의의 및 기본목표……3

1. 의의……3
2. 기본목표……4

Ⅱ. 조사개요……5

Ⅲ. 중점추진방향……9

Ⅳ. 조직구성……16

1. 구성……16
2. 설치기간……17
3. 조직체계 및 담당사무……18

Ⅴ. 분야별 시행계획 ……24

1. 조사구설정……24
2. 조사항목 확정 및 조사표 설계……26
3. 실시기관 관계관회의…… 28
4. 조사원 등 인력동원 및 운영……29
5. 지도공무원 동원…… 38
6. 교육훈련……40
7. 조사표류 및 기자재 제작·배포…… 45
8. 홍보……48
9. 실지조사 및 지도……51
10. 조사표 부호기입 및 내용검토…… 56
11. 조사표류 제출 및 접수…… 58
12. 사후조사……60
13. 종합평가 및 포상……61
14. 조사결과공표 및 종합분석……63

Ⅵ. 행정사항……65

[붙 임]

Ⅰ. 의의 및 기본목표

1. 의의

❑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조사하는 국가기본통계조사

- o 1925년 이후 매 5년마다 조사를 실시
- o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200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

❑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이들의 규모, 구조, 분포 및 사회경제적인 특성 등 종합적인 통계정보 제공

- o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각종 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o 기업경영 자료,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자료 및 각급학교의 교육자료로도 널리 활용

❑ 특히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객관적인 수치로 현재의 우리 모습을 종합 조명함으로써, 한 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

- o 새로운 세기의 진입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고, 우리의 미래 설계를 위한 긴요한 국가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됨
  - 21세기 지식사회의 확충과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뒷받침

❑ 통계적으로는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통계의 기준자료(benchmark statistics)가 됨

2.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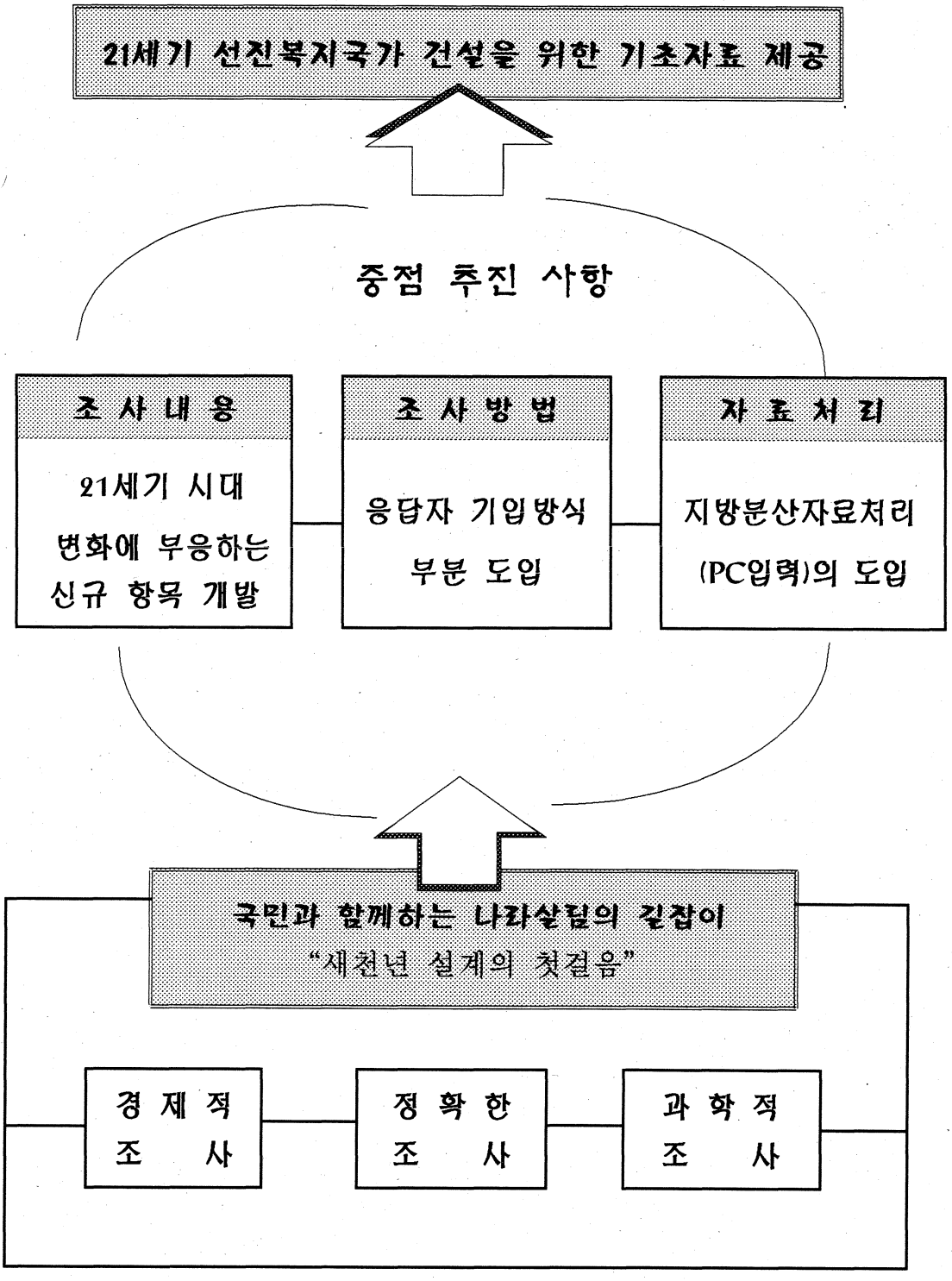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중점 추진 사항
조 사 내 용
21세기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 항목 개발
조 사 방 법
응답자 기입방식
부분 도입
자 료 처 리
지방분산자료처리
(PC입력)의 도입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의 길잡이
"새천년 설계의 첫걸음"
경 제 적
조 사
정 확 한
조 사
과 학 적
조 사

Ⅱ. 조 사 개 요

1. 연 혁

❑ 인구총조사

o 1925년이후 매 5년마다 실시
o 대한민국정부 최초의 인구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
o 2000년 인구총조사는 제 16차에 해당

❑ 주택총조사

o 1960년이후 매 5년마다 인구총조사와 병합하여 실시
o 2000년 주택총조사는 제 8차에 해당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o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1호
o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 7. 1제정)

3. 조사기준시점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4.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구역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다만, 다음과 같은 인구와 거처는 제외

[제외되는 인구 및 거처]

제외되는 인구	제외되는 거처
· 해외 취업·취학중인 사람 ·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 국내주둔 외국군인·군속 및 그 가족 등	· 국군,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막사 ·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 외국군대의 병영막사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있는 거처 등

5. 조사기간

❑ 준비조사

o 전수 : 2000. 10. 30 ~ 10. 31(2일간)
o 표본 : 2000. 10. 31(1일간)

❑ 본조사 : 2000. 11. 1 ~ 11. 10(10일간)

6. 조사체계

❑ 주관기관 : 통계청

❑ 실시기관 : 16개 시도 및 5개 중앙부처

o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도원 ⇔ 조사원

o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 일반조사구란 조사원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역, 특별조사구란 조사원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을 말함

7. 조사방법

❑ 조사구를 조사사항에 따라 전수와 표본으로 구분하여 조사

o 전수 : 기본항목만 조사(전체 가구의 90%)

o 표본 : 기본항목+심층항목을 모두 조사(전체 가구의 10%)

※ 조사구란 전국 읍면동을 지형지물을 이용, 일정 가구수가 포함되도록 구획, 설정한 조사구역임

❑ 조사대상을 조사원 면접방식과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병행 조사

o 조사원 면접방식은 아파트조사구이외 전수조사지역 및 모든 표본조사지역

o 응답자 기입방식은 아파트조사구의 전수 조사지역

❑ 준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조사

o 준비조사 : 조사구 경계, 거처 및 가구 확인 및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등 사전작업을 수행

o 본 조 사 : 조사표 작성 업무 등 실지조사 수행

8. 조사사항

❑ 전수조사 항목 : 20개 항목

o 인구에 관한 사항 : ① 성씨 ② 본관 ③ 가구주와의 관계 ④ 성별 ⑤ 나이 ⑥ 교육정도 ⑦ 혼인상태 ⑧ 출생지

o 가구에 관한 사항 : ① 가구구분 ② 사용방수 ③ 주거시설형태 ④ 점유형태 ⑤ 거처의 종류 ⑥단독주택의 종류 ⑦대표가구여부

o 주택에 관한 사항 : ① 연건평 ② 대지면적 ③ 총방수 ④ 건축 연도 ⑤ 편익시설수

❑ 표본조사 항목 : 30개 항목

o 인구에 관한 사항 : ① 전공분야 ② 1년전거주지 ③ 5년전거주지 ④ 컴퓨터 활용상태 ⑤ 인터넷활용상태 ⑥ 아동보육상태 ⑦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⑧ 통근·통학여부 ⑨ 통근·통학장소 ⑩ 통근·통학소요시간 ⑪ 이용교통 수단 ⑫ 총출생아수 ⑬ 경제활동상태 ⑭ 근로형태 ⑮ 산업 ⑯ 직업 ⑰ 현직업 근무연수 ⑱ 자녀거주장소 ⑲ 생계수단 ⑳ 주부양자 ㉑ 거동불편정도

o 가구에 관한 사항 : ① 취사연료 ② 난방시설 ③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④ 자동차 보유대수 ⑤ 주차시설 ⑥ 상수도시설 ⑦ 식수사용형태 ⑧ 임차료 ⑨ 거주기간

9. 동원인력

계	조 사 원	지 도 원	지도공무원
199천명	170천명	13천명	16천명
	┌전수 100천명		┌시 도 255명(시군구당 1명)
	│표본 27천명		│시군구 3,505명(읍면동당 1명)
	└내검 43천명		│읍면동 10,515명(읍면동당 3명)
			└통계청 1,420명

10. 확보예산

❑ 확보예산 : 83,387 백만원

❑ 주요과목별 예산

o 조사요원 채용수당 : 70,624백만원
o 조사표류 인쇄, 홍보비 등 관서운영비 : 8,893백만원
o 여 비 : 3,674백만원
o 기 타 : 197백만원

Ⅲ. 중점추진방향

◇ 21세기 새로운 정책에 부응하는 조사항목 신설·보완
◇ 수치지도에 의한 조사구 설정
◇ 열악한 조사환경 대처를 위한 조사방법 개선
◇ 읍면동 통계기능 전환에 따른 조사체계의 보완·강화
◇ 체계적인 인력동원 및 운영
◇ 체화적인 교육훈련으로 다양한 현장조사에 대응
◇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개발
◇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자료처리기간 단축 및 자료제공 서비스 강화

❑ 21세기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조사항목 신설·보완

o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 복지관련 신규항목을 대폭 확충

	기존항목('95)	신규 추가항목
	7개 항목	17개 항목
▷ 지식기반사회(3/2)	교육정도·산업·직업	현직업 근무연수·전공분야
▷ 정보화사회(0/4)	-	컴퓨터 활용상태·인터넷활용상태·개인휴대용통신기기·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 복지사회(0/5)	-	아동보육상태·자녀거주장소·생계수단·주부양자·거동불편정도
▷ 삶의 질 향상(4/6)	사용방수·주거시설형태·점유형태·임차료	취사연료·난방시설·자동차보유대수·주차시설·식수사용형태·상수도 시설

o 인구·가구 및 주택에 대한 기본항목은 계속 조사

❑ 수치지도(Digital Map)에 의한 조사구 설정

o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사업으로 제작된 최신의 수치지도를 이용한 읍면동 기본도를 작성하여 조사구 설정

- 수치지도의 정확한 읍면동 경계 및 주요 지형지물등 활용으로 정확성 제고
- 조사구설정에 필요한 크기대로 확대 및 축소 가능, 업무의 효율성 도모

o 설정된 조사구 경계를 전산입력, 조사구 요도를 전산출력 활용

- 정확한 조사구 경계입력으로 조사대상의 누락 및 중복의 최소화
- 조사구 요도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 경감과 재활용으로 예산절감 예상

o 향후 관련 D/B를 이용한 소지역 통계 개발로 종합적인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열악한 조사환경 대처를 위한 조사방법 개선

o 맞벌이 및 1인가구등 주간 부재가구, 사생활 보호로 면접에 의한 응답거부 가구의 증가와 국민수준 향상으로 응답자 기입방식의 도입

- 부재가구가 많은 아파트조사구의 전수조사에 한해 실시(전체의 34%)
- 응답자 기입방식은 조사원 1인당 조사담당량 배정을 많이 할 수 있어 인건비 예산절감(1인당 2조사구→3조사구)

o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 기본정보를 사전 수집 및 활용, 조사업무 부담 경감

- 준비조사기간중 관리사무소, 주민 등으로 부터 수집
- 주거시설형태, 총방수 등 공동주택의 기본정보는 사전에 조사표에 기입, 가구에 배부 또는 면접조사시 활용

o 주간 및 장기 부재가구에 대한 인구 및 주택의 누락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조사방법을 유연하게 대처

- 모든 가구는 조사기간중 정해진 조사방법(면접식 또는 응답자기입)으로 조사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 맞벌이 및 1인가구 등 주간부재가구는 야간방문 등으로 최대한 성실히 조사하고도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응답자 기입방식을 적용, 조사

  · 조사표배부 및 회수시 비밀보호용봉투와 조사 연락전 적극 활용

- 조사기간중 장기부재가구에 대해 응답자 기입방식으로도 조사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원이 지도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조치

  ·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은 장기부재가구를 반드시 파악하고 추후 시달될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누락이 없도록 조치

❑ 읍면동 통계기능 전환에 따른 조사체계의 보완·강화

o 시군구로 통계기능의 전환으로 읍면동 공무원이 감축되므로 지도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현장조사의 차질을 사전 예방

- 지도원은 담당 조사원에 대한 관리, 지도권한을 많이 부여
- 지도원의 교육은 읍면동 공무원과 합동실시하여 위상과 교육강도를 높이고 채용기간을 연장(4일)

o 기능전환된 읍면동은 총조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통계담당공무원이 없어지는 데 따른 총조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조사원 및 지도원에 대한 업무 분장, 조사용품류 관리 및 배부 등 총괄

o 기능전환 읍면동의 통계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보조원 채용기간을 연장, 총조사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조사기능 보완

- 당초 읍면동의 업무보조원 1명 9일을 기능전환 읍면동(1,706개) 1명 30일, 기능 미전환 읍면동(1,799개)은 15일로 지원 배정

o 읍면동의 통계기능이 시군구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구로 이체되는 인력을 이체전 읍면동에 전진배치하여 취약해진 현장조사체계 보완

- 행정자치부 지침이 일선기관으로 시달, 읍면동 이체인력을 적극 활용
- 읍면동 전진배치인력과 중앙 실사지도 인력이 합동 현장업무 수행 등

❑ 체계적인 인력동원 및 운영

o 총조사는 지자체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조사원·지도원의 채용, 중앙부처의 공무원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므로 체계적인 인력동원 구축

- 지자체의 행정기관은 조직체계에 따라 조사참여 공무원을 선정, 운영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군구 이체인력을 우선 대규모 통계조사에 투입, 차질이 없도록 조치(2000. 3 행자부 지침 시달)
- 지자체 시군구의 장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하는 조사원 및 지도원을 모집·채용, 관리
  - 읍면동의 조사원 및 지도원 모집인원은 통계청에서 배정
  - 읍면동은 모집인원을 접수, 시군구로 보고
- 5개 중앙부처는 하부 및 산하 조직체계를 통하여 조사담당공무원을 지정, 특별조사구의 조사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o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동원된 지도공무원 등은 조사기간 전후에는 총조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장이 배려 조치

- 과거 총조사에서는 조사기간을 전후하여 고유업무와 병행, 지도공무원의 부담 가중으로 조사투입 효과 미흡
- 특히 금번 조사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조사체계의 누수 우려가 예상되므로 지자체 기관장의 각별한 배려 필요

o 지자체 시군구의 장이 모집·채용하는 조사원 및 지도원 등 현장조사 담당 인력은 성실하고 우수한 사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 우수한 조사원 및 지도원 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이전 총조사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참여 여부 타진
    (통계청에서 D/B 자료이용 사전 파악 : 별도 통보예정)
  - 지역사정에 밝은 통·리·반장 및 관내의 거주자 채용
  - 관내의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단체의 우수 구성원, 대학생 등 참여 유도

- 조사원 및 지도원의 모집은 통계청에서 주요 일간지·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지자체에서도 자체 인터넷홈페이지, 반상회보 및 행정게시판등 이용, 적극 대처

o 조사의 착오, 누락 및 항목간 불일치가 없는 성실한 조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

- 우수 조사원에 대해 포상 확대 및 감사장 수여, 산업시찰 실시
- 향후 총조사의 지도원 임명 및 각종 통계조사에 우선 채용 등

❑ 체화적인 교육훈련으로 다양한 현장조사에 적극 대처

o 조사원, 지도원 및 지도공무원 등 조사대상별로 특화, 교육훈련 강도에 차등 실시하여 열악한 현장조사에 적극 대응

- 지도공무원은 총조사 전반에 걸친 조사과정 운영에 중점
- 지도원은 담당 조사원의 조사실시상황을 지도 감독하는 역량 부여에 중점
- 조사원은 현장조사의 실지조사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

o 총조사 이해와 조사지침을 병행하고 실제 사례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역동적인 현장조사 상황에 신속한 대처 능력 배양

- 조사원은 첫번째 가구의 조사경험이 중요하므로 표준화된 면접기법 개발 교육
- 이전 총조사에서 도출된 현장조사 사례를 분석,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 등 교육

o 교육기자재 개선 및 조사원의 교육부담 경감 등 교육여건을 조성, 교육효과를 높임

- 시청각교재 및 보조교육기자재 등을 개선, 피교육자의 흥미 유발
- 조사지침서를 경량·다종화하여 조사대상별로 활용 등

o 조사원등 교육훈련 내용이 전국적 통일, 일치될 수 있도록 교육 전달과정의 왜곡 방지와 교관요원별 특성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도모

- 중앙교관단의 표준화된 교육교재 제작 활용 및 우수 교관요원 확보

❑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개발

o 조사 편리성 및 자료처리를 감안하고 응답자에게 친근하고 부담이 없는 크기 및 제본방식으로 변경

- 과거에는 크기와 부피가 큰 B4 낱장에서 A4 소책자형으로 변경

o 응답자의 편의성 및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사표 설계 등 개선

- 조사항목에 대한 기입예시를 조사표 표기하여 이해도 제고
- 표본조사표는 칼라 인쇄(2도)하여 시각적 효과 제고
- 일반국민이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어체 일상용어 사용
- 조사항목을 응답자 위주로 배열하여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및 응답부담 경감 등

❑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o 역동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홍보수단을 다양화

- 슬로건, 로고, 마스코트(캐릭터) 제작, 활용
- 인테넷에 의한 홍보 강화
  · 홈페이지 개설(www.nso.go.kr/census2000)
- 조사표 작성요령에 대한 수신자 무료전화 안내 : 080-527-2000 서비스

o 선진 홍보기법 도입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민간부문의 홍보기법 도입 : 이벤트 개발 및 홍보물 기획 등
- 교육·계도 프로그램 확대 : 비디오 등

o 연령대 및 특성별 등 target group별로 홍보수단을 특화

- 학생층 : 홍보책자, 학생용 팜플렛, 인터넷 캠페인, 이벤트 등
- 주간부재가구 : 심야 방송(TV, 라디오), 가구전단 등
- 외국인 : 영자신문, 팜플렛 및 포스터 등

o 지방 홍보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지역언론 및 지자체의 홍보여건 조성 및 지원
- 지역별 총조사 설명회 개최 등

❑ 시의성있는 조사결과를 위해 자료처리기간 단축 및 자료제공 서비스 강화

o 지방분산 PC입력방식 및 자동심사기법을 도입하여 자료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므로써 신속한 조사결과 활용

- 잠정 : 2000년말, 전수 : 2001년 9월, 표본 : 2001년말

o 자료제공의 다양화로 이용자 편의 도모

- 다양한 결과표를 반영한 간행물 발간 제공
  - · 일반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 결과표
  - · 전문적 이용자가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연관 결과표 등
- 보고서 발간전 CD-ROM에 의한 제공
  - · 보고서 전체 내용 및 설명자료, 분석기능을 포괄하여 수록
  - · 제작수량을 크게 늘리고 저렴하게 판매(보고서의 10% 내외)
- 인터넷에 의한 자료제공 : STAT-KOREA에 수록 등
  - · 보고서 발간전 결과공표자료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수록

o 원시개별 자료 제공으로 전문연구기관 및 개별 연구 수요에 부응

- 10% 및 2% 표본데이타 등 원시자료를 다양한 크기와 매체로 제공 검토

Ⅳ. 조직구성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 및 실시기관별로 실시본부를 구축

◇ 주관 및 실시기관간 유기적인 협조 및 원활한 의사전달 체제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1. 구 성

가. 기본원칙

❑ 주관기관(통계청)과 실시기관별의 추진업무 특성에 따라 조직 편성을 하되, 5개 중앙부처의 조직편성은 기관실정에 맞게 편성

❑ 주관 및 실시기관간 또는 실시본부내 조직의 분야별 명확한 사무구분으로 업무 중복 및 누락 방지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 실시본부내 담당부서의 인적구성을 전문화하여 능률성 제고

나. 조직편성

❑ 통계청 실시본부

o 통계청은 총조사의 기획, 실사 및 자료처리 등 사업주관부서로서 조직체계를 편성

o 조직편성은 1본부장, 3부본부장, 5부, 16반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실시본부

o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행정조직별로 편성

o 조직편성

- 시 도 실시본부 : 본부장, 부본부장, 실시부장
- 시군구 실시본부 : 본부장, 실시부장
- 읍면동 상 황 실 : 상황실장

❑ 특별조사구 실시본부 :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다. 운 영

❑ 통계청과 시도 실시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00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기관 관계관 회의」를 둠

o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와 시도 통계담당과장회의로 구분

❑ 시도와 시군구, 시군구와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본부간 관계관 회의를 두어 협조체제 유지

o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회의와 읍면동장 회의로 구분

❑ 통계청과 특별조사구 실시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00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조사구 관계관회의」를 둠

2. 설치기간

❑ 통계청 실시본부 : 1999. 12월 ~ 2001. 3월

o 수도권관리 부본부 : 2000. 9월 ~ 2000. 12월

❑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조사구 실시본부 : 2000. 7월 ~ 2000. 12월

3. 조직체계 및 담당사무

❑ 통계청 실시본부

o 조직체계

- 실시본부장 : 통계청장
- 부 본 부 장 : 기획·조사 부본부장, 자료처리 부본부장, 수도권관리 부본부장
- 5 부 : 기획·조사부, 조달부, 사후평가부, 자료처리부, 전산개발·집계부
- 16 반 : 조사기획반, 인력동원반, 조사상담반, 홍보반, 조사구반, 행정지원반, 회계반, 물품조달반, 사후조사반, 자료처리기획반, 전산운영반, 자료입력·심사반, 전산집계반, DB 개발반, 행정지원반(수도권), 홍보지원반(수도권)

※ 붙임 통계청 실시본부 조직표 참조

o 담당사무

-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행
- 조사항목의 선정과 조사표의 설계
- 조사표류 발주 및 배부
- 조사구 설정 및 관리
- 유관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도공무원의 동원 및 교육
- 조사원 및 지도원 교육계획 수립
- 교육용 기자재의 제작
-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대국민 홍보실시
- 사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조사자료의 전산처리 및 집계
- 기타 인구주택총조사의 세부 실시 사항

o 심의회 및 회의체 설치운영

- 실시본부 각부의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심의회 구성하여 운영(6개)

  · 조사기획 심의회의, 홍보 심의회의, 조사구 심의회의, 조달 심의회의, 자료처리 심의회의, 전산개발·집계 심의회의

- 총조사의 원활한 수행과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회의체 운영

  · 청내간부회의, 청내실무자회의, 외부 전문가·이용자 회의, 통계위원회 회의

❑ 지방자치단체 실시본부

o 조직체계

- 시 도 실시본부 : 본부장(부시장·부지사), 부본부장(통계담당부서장), 실시부장(통계담당관)
- 시군구 실시본부 : 본부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실시부장(담당과장)
- 읍면동 상 황 실 : 상황실장(읍면동의 장)

※ 붙임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 참조

o 담당사무

[사전준비]

-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현지조사 및 내용검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강구
- 지도원 및 조사원 선발 임명 및 교육
- 자체실정에 맞는 홍보방법 개발 및 시행 등

[조사실시]

- 현지 실사지도 및 조사업무 수행
- 지도원 및 조사원 관리
- 조사진행사항 보고
- 현지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 단계별 집계표 작성
- 조사표류 배부, 관리, 수집 및 제출 등

o 관계관 회의 개최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회의
  · 시 기 : 2000. 9월초(시·도 자체계획에 의해 실시)
  · 내 용 : 시도 실시계획 및 시군구 수행사항 설명, 시군구의 행정지원 요청 등

- 읍면동장 회의
  · 시 기 : 2000. 9월말(시·군·구 자체계획에 의해 실시)
  · 내 용 : 시군구 실시계획 및 읍면동 수행사항 설명, 읍면동의 행정지원 요청 등

o 운영체계

- 시 도 실시본부 : 통계청 실시본부와의 협조하에 조사업무 지휘·감독
- 시군구 실시본부 : 시도 실시본부의 지시하에 조사업무 지휘·감독
- 읍면동 상 황 실 : 시군구 실시본부의 지시하에 조사업무 지휘·감독

❑ 특별조사구 실시본부

o 조직편성 방향

- 군병영 등 특별지역은 시설의 특수성으로 일반조사원이 조사하기 곤란하여 특별조사구를 설정 운영
  (군병영, 해양경찰서, 파출소, 교도소, 소년원, 재외공관, 외국인 임시보호소 등)

- 특별조사구를 관장하는 5개 중앙부처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실시조직을 총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 운영

o 담당사무

- 특별조사구에 상주하는 조사대상에 대한 실사, 실사지도 및 조사표 수집등 제반 관련업무

[조사대상 및 조사단위]

	조사대상	조사구(조사단위)	비 고
· 외교통상부	· 해외주재 공관원 및 그가족	주재국단위로 설정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등
· 국 방 부	· 모든 정규군인 (영내외 거주 불문)	부대(중대·대대), 학교, 병원, 함정단위	부대, 사관학교, 통합병원 등
· 법 무 부	· 교도소 및 소년원 재소자 · 교도대, 보호시설내 외국인 · 구치소내 주거부정자	교도소,구치소,소년원, 교도대,출입국관리 사무소 단위	교도소,구치소,소년원, 교도대,출입국관리 사무소,외국인보호소등
· 경 찰 청	· 전투경찰순경,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 전투경찰은 중대 단위 · 경찰서보호실은 시도 단위	경찰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등
· 해양경찰청	· 전투경찰순경(해경요원)	전투경찰순경(해경요원)은 중대 단위	해양경찰서 등

- 각 부처별 특별조사구에 사용하는 조사표는 특성별 달리 제작 배부
  -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용 조사표
  - 국방부는 군·전경대용 조사표
  - 법무부는 재소자용, 군·전경대용, 외국인 조사표(3종)
  - 경찰청은 교도소용, 군·전경용 조사표(2종)
  - 해양경찰청은 군·전경용 조사표

o 운영체제

- 통계청 실시본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업무 지휘·감독
- 해당 부처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지시, 훈련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특별조사구는 관계기관 담당관 회의 구성 운영

o 관계관 회의 : 총 3회 개최 예정

※ 세부실시 등은 관계관회의에서 언급되어 있음

[붙임 1]

통계청 실시본부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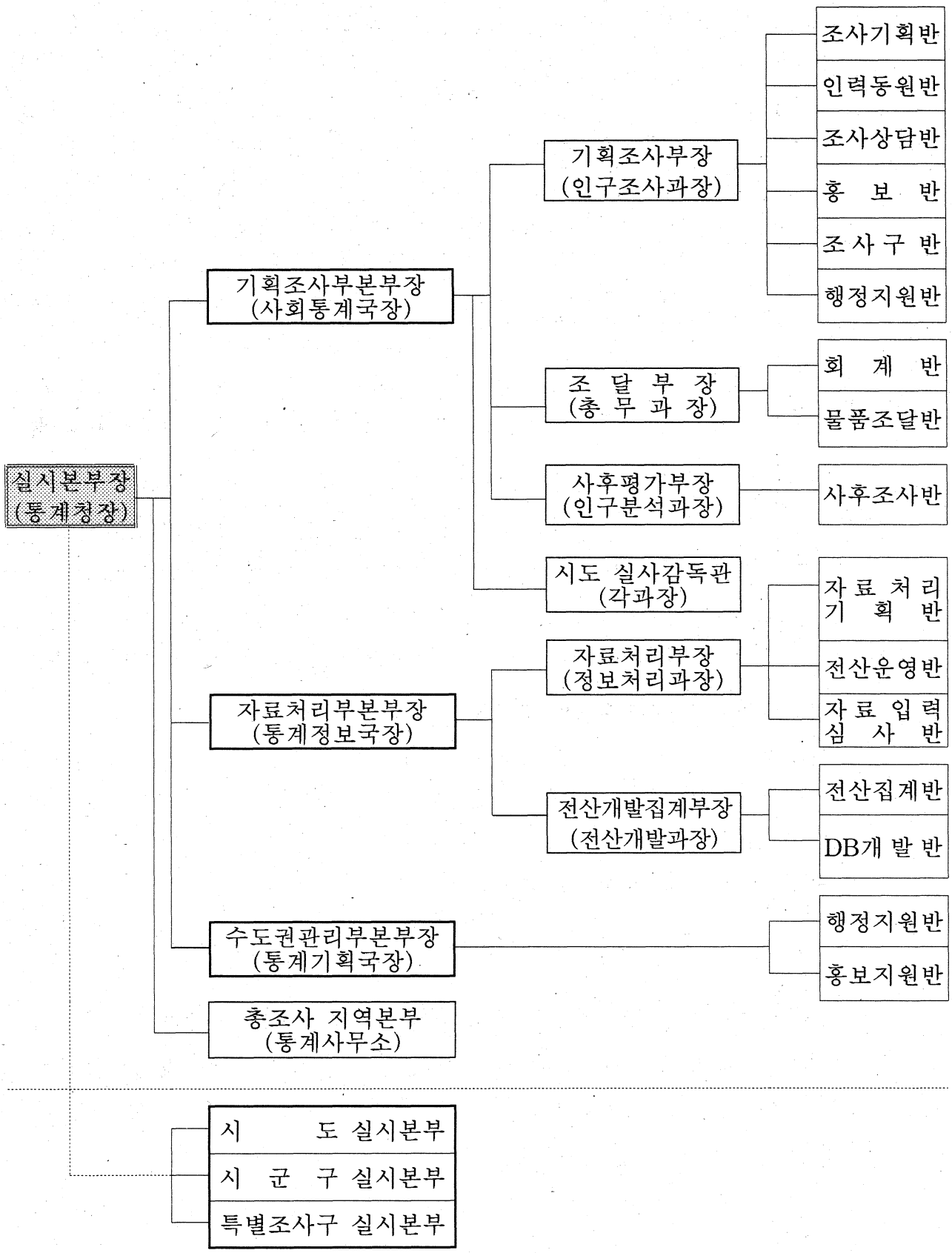

[붙임 2]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본부 조직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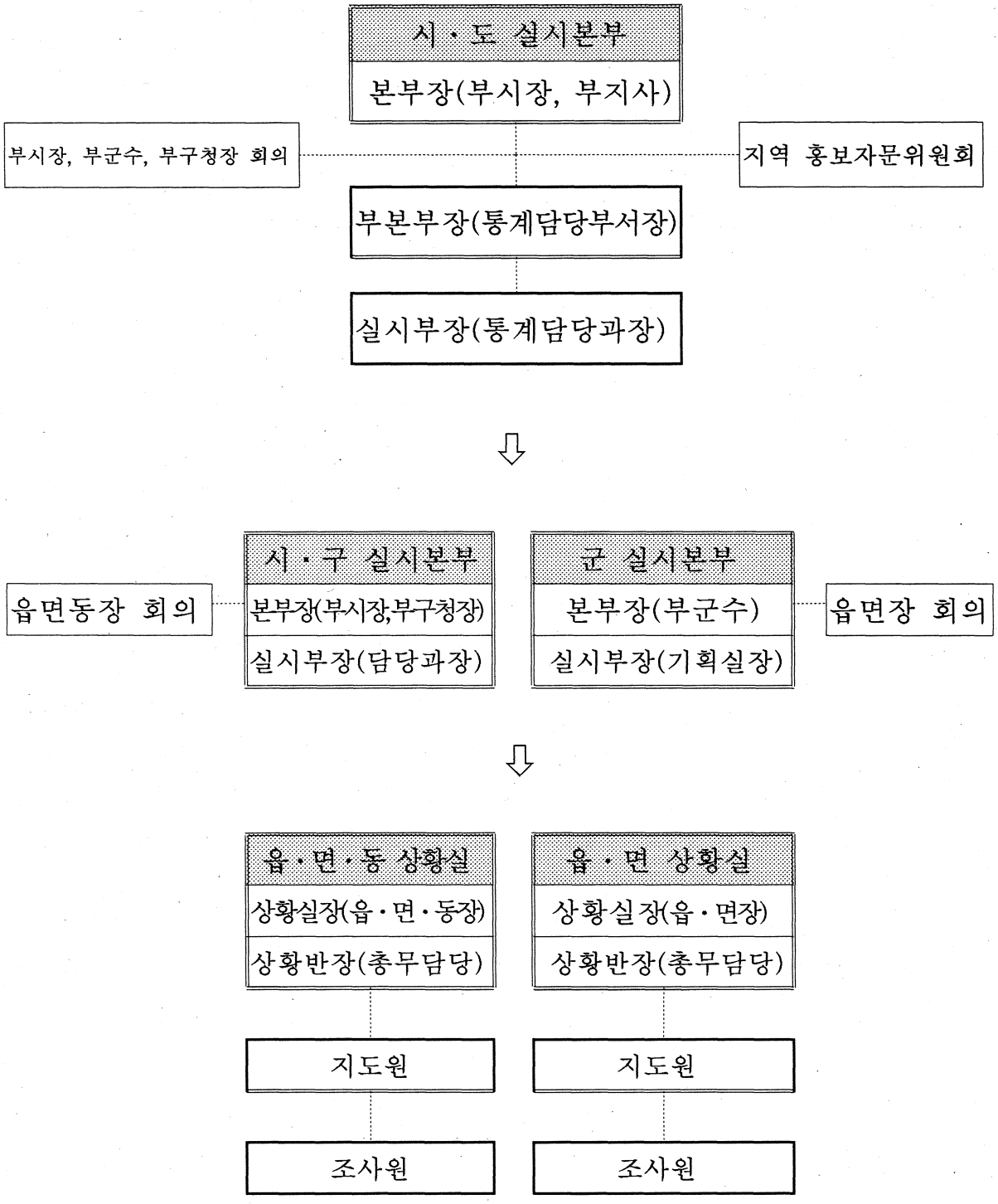

V. 분야별 시행계획

1. 조사구설정

◇ 전국의 인구·가구 및 주택을 누락·중복없이 조사하기 위하여 실지조사에 선행된 중요한 업무로 1999. 9월부터 2000. 6월까지 추진

◇ 특히 금년은 수치지도(Digital Map)를 이용, 조사담당구역(조사구)을 명확히 구획 설정함으로써 총조사 준비에 완벽을 기함

❑ 의의 및 목적

o 전국의 모든 지역(읍면동별)을 대상으로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 지도(기본도)상에 일정 가구수가 포함되도록 조사구역단위(조사구)를 구획하는 작업

o 조사담당구역을 명확히하여 인구·가구 및 주택의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 조사원의 업무량 배분 및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등

❑ 기본방향

o 가구의 특성에 따라 분류 설정하며, 일반조사구는 아파트조사구·보통조사구·섬조사구 및 기숙사시설 등 6개 조사구 종류로 설정

※ 특별조사구는 해당부처에서 특성(재외공관, 전투경찰대 등)에 맞는 조사단위 구분

o 일반조사구는 1개 조사구를 60±20 가구 기준으로 지형지물을 이용,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

o 전국의 조사구 설정은 시부 및 군부지역으로 구분 실시

❑ 조사구설정 체계

o 통계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사구설정 절차

o 기본도, 부분확대도 및 아파트전개도 제작 배부(통계청→시도)

- 국립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치지도를 전산입력, 읍면동 단위별 출력

o 행정구역 경계확인 및 주요지형지물 변동여부 수정·보완 등(읍면동)

o 거처 및 가구수를 파악하여 조사구 가설정(읍면동)

o 가설정한 조사구 적정여부를 현지 심사 및 승인, 제출(시도→ 통계청)

o 수정 보완된 사항을 전산입력, 조사구요도 작성 배부 활용(통계청→읍면동)

- 전산입력한 조사구요도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수작업(약5%)으로 작성

❑ 추진일정

o 군부 지역(제주도 전역 포함) : 1999. 9~10월 설정 완료

o 시부 및 특·광역시 지역 : 2000. 2~6월 설정 완료

❑ 조사구설정 결과(2000. 7 현재)

	계	아파트 조사구	보통 조사구	섬 조사구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사회 시설조사구	관광호텔 및 외국인조사구
계	250,067	85,285	159,699	1,126	2,314	1,137	506
군부지역	32,092	3,467	27,023	675	569	292	66
시부지역	97,382	38,911	56,425	249	1,129	496	172
특·광역시	120,593	42,907	76,251	202	616	349	268

※ 조사구의 수정에 따라 향후 변동이 있음

❑ 향후 계획

o 조사구 수정 : 승인일 ~ 2000. 10월

- 조사구설정이후 행정구역, 거처의 신축 및 철거 등 가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는 수정 보완

o 조사구요도 전산출력 및 배부 : 2000. 8 ~ 10월

2. 조사항목 확정 및 조사표 설계

◇ 인구의 구조·분포 등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보완·신설

◇ 조사항목은 이용기관(자), 전문가 등 수요자 입장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

❑ 기본방향

o 21세기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필요한 신규 조사항목 선정

o 통계의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과거 조사 기본항목은 계속 조사

o 조사항목 신설에 따른 응답자의 응답부담, 자료수집의 용이성 및 객관성 등 감안

o 금번 총조사는 응답자 기입방식 부분 도입으로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 설계

❑ 추진경과

o 조사항목 선정 이용기관(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집('98. 4~2000. 2)

o 수차례 걸친 시험조사로 조사항목 타당성 검토('98. 6~2000. 3)

❑ 조사항목 선정 검토

o 인구·가구 및 주택에 관한 '95년 기본항목은 계속 조사

o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따른 조사항목 신설

- 기존 3개(교육정도·산업·직업)에서 2개항목(현직업근무연수·전공분야) 추가

o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른 조사항목 대폭 신설

- 컴퓨터 및 인터넷활용상태, 개인휴대용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 보유 등 4개 항목 추가

o 고령자 및 아동 복지, 삶의 질 관련 조사항목을 확충

- 노인복지, 아동보육상태 등 5항목
- 자동차보유대수 및 주차시설, 취사연료 등 6항목

❑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

o 조사표의 크기 및 제본방식을 응답자 위주로 설계

o 응답자 기입방식 도입에 따라 조사표에 기입예시를 표기, 이해도 제고

o 표본조사표를 2도 인쇄하여 시각적 효과 제고

o 일반국민이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어체 일상용어 사용

o 조사항목을 응답자 입장에 배열하여 응답부담 경감 등

❑ 추진일정

o 조사항목에 대한 이용기관 의견수렴(최종) : 2000. 2월

o 조사항목 확정을 위한 최종 현장조사 실시 : 2000. 2 ~ 3월

o 조사항목 확정(안) : 2000. 4 ~ 5월

o 청내 의견수렴 및 통계위원회 상정 : 2000. 4 ~ 5월

o 각종 조사표 설계 : 2000. 3 ~ 6월

o 조사항목 및 조사표 설계 확정 : 2000. 6. 29

3. 실시기관 관계관회의

◇ 총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유대 및 협조체제를 구축,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

◇ 조사실시 체계의 특성에 따라 실시기관별로 관계관 회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실시기관 관계관 회의

	시도 통계담당과장 회의	시도 통계담당 실·국장 회의
· 예정시기	2000. 6. 14(1차 : 기실시) 2000. 8. 30 ~ 9. 1(2차)	2000. 8. 17
· 참석대상	통계담당과장 통계계장 및 실무자	통계담당 실·국장 (기획관리실장, 정보화담당관 등)
· 주요회의 내 용	- 인구주택총조사 종합시행계획(안) 설명 및 토의 · 홍보계획, 조사표류 배부계획, 인력동원 및 훈련계획 등 - 시도 수행업무 및 협조사항 등	- 인구주택총조사 종합시행계획 설명 - 시·도 수행사항 설명 - 시도 행정지원 및 협조사항 등

❑ 특별조사구 실시기관 관계관 회의

	제 1 차 회의	제 2 차 회의	제 3 차 회의
· 시기(예정)	2000. 7. 18(화)	2000. 9. 15(금)	2000. 11. 24(금)
· 참석대상	담당과장 및 실무자	좌 동	좌 동
· 주요회의 내 용	- 사전업무협의 - 종합시행계획 설명 - 예산관련 협의 - 기타 협조사항 등	- 조사표 작성 및 내검 지침 교육 - 소요예산 산출 등	- 조사표류 제출 및 조사결과 토의

4. 조사원 등 인력동원 및 운영

◇ 총조사의 성공적 실시을 위한 최대 관건은 현장조사담당 조사원의 확보 및 우수 인력동원 투입임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원인원 한정, 우수 조사원 확보 곤란 등 인력동원이 취약하여 현장조사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모든 노력 경주

o 우수 조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 동원

o 지도원의 기능 강화 및 채용기간 연장

o 읍면동 기능전환 지역에 대해 중점 행정지원 등

가. 동원인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동원인원	동원(채용)일수	1일단가	소요예산	비 고
계	192,776			63,518	
▷조사원	133,409			47,135	
· 정규조사원	127,320	13일(교육2일, 조사 11일)	28,270원	46,791	
· 예비조사원	6,089	2일(교육2일)		344	정규조사원의 5%
▷지도원	12,218	17일(교육2일, 조사 15일)	28,270원	5,872	조사원10명당 1명
▷내검요원	42,500			8,468	
· 시 도	2,500	3일(교육 및 내용검토)		178	100조사구당 1명
· 시군구	10,000	5일(교육 및 내용검토)	23,684원	1,184	25조사구당 1명
· 읍면동	25,000	10일(교육 및 내용검토)		5,921	10조사구당 1명
	5,000			1,185	50조사구당1명(지도)
▷업무보조원	3,776			2,043	
· 시 도	16	30일(교육1일 포함)		11	시 도당 1명
· 시군구	255	30일(교육1일 포함)		181	시군구당 1명
· 읍면동	3,505		23,684원	1,851	읍면동당 1명
- 일 반	1,799	15일(교육1일 포함)		639	
- 기능전환	1,706	30일(교육1일 포함)		1,212	

※ 2000. 7월 조사구 설정결과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향후 조사구 증가에 따라 약 500명 추가 동원이 예상됨

나. 조사원의 모집 및 관리

❑ 우수조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 동원

o 통계청의 D/B 관리 총조사 유경험자(80,000여명) 활용

- 금번 총조사 참여 권고 광고엽서 발송(5. 20이후)
- 참여희망자를 시도에 추천, 채용 등

o 기타 통계조사 유경험자 활용

- 광공업통계조사등 D/B관리하는 조사 유경험자도 엽서 발송
- 지방사무소에서 수시로 채용, 활용하는 조사 유경험자 활용

o 기타 조사지역관내의 자원봉사센터, 사회단체 등 우수 인력 참여 권장

❑ 모 집

o 모집기간 : 2000. 9. 1 ~ 9. 20

o 모집장소 : 3,505개 읍면동에서 모집

o 모집인원 : 16개 시도별 별도 배정(읍면동에서 모집인원 게시)

o 모집방법

- 중앙 일간지 신문공고 모집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통계청, 시도, 시군구)
- 중앙 및 지역 TV 스파트 방송
- 조사원 모집공고문을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부착
- 통계조사 유경험자에 대한 통계청 추천 등

o 자격요건

- 18세이상으로 고졸수준의 소양이 있는 자(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조사지역 관내 및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
- 가구방문시 불응가구를 설득할 수 있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조사기간중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채용기간

	전수조사원	표본조사원
	13일간	13일간
· 교 육	10. 16~10. 28중 1일	10. 16~10. 28중 2일
· 준비조사	10. 30~10. 31(2일간)	10. 31(1일간)
· 본 조 사	11. 1~11. 10(10일간)	11. 1~11. 10(10일간)

❑ 1인 조사원 업무량

o 배정원칙

- 표본조사구 : 1인 1조사구
- 전수조사구 : ┌ 조사원 면접방식은 1인 2조사구
  └ 응답자 기입방식은 1인 3조사구

[특성번호별 배정기준]

	전수조사		표본조사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특성번호 A	2개조사구	3개조사구	1개조사구
특성번호 1·2 특성번호 3·4·5		없 음	
특성번호 3·4(100인미만)	-	-	2개조사구

※ 특성 A는 아파트조사구, 특성 1은 보통조사구, 특성 2는 섬조사구, 특성 3은 기숙시설조사구, 특성 4는 특수사회시설조사구, 특성 5는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조사구임

o 읍면동의 전수 및 표본조사구를 조사원 1인당 배정원칙을 적용하여도 읍면동별로 일부 잔여 조사구 발생

- 조사구가 남을 경우에도 조사원을 배정하되, 조사일수를 조정

※ 세부적인 사항은 인력동원 및 교육계획에서 설명

o 아파트조사구는 전부 응답자 기입방식(표본조사구 제외)에 따라 조사원 면접 방식보다 1개조사구가 많으므로 조사구 배정시 균분하게 적용 배정

- 1인 3조사구 배정은 다소 업무량이 과다하므로 가급적 180가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 전수조사인 1개 아파트조사구의 가구가 과다(80가구이상)되어 18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실정에 맞게 최소한 조정 가능
  · 조사원 업무량 배정후 시군구를 경유하여 통보→ 추후 조사원 예산 배정

❑ 채용선발기준

o 인구주택총조사 및 통계청주관 통계조사 유경험자
o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관 임직원 가족
o 부녀회원 등 각종 사회단체 가입자
o 기타 총조사 업무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자
※ 채용희망자중 상기 순서로 우선 선발, 채용

❑ 심사 및 채용

o 읍면동의 장이 1차 자격 및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을 선정하여 시군구에 보고
- 모집기간내 채용예정인원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에 보고

o 시군구의 장은 읍면동에서 추천된 인원을 최종심사하여 채용

- 채용예정인원이 미달된 읍면동은 인근 지역의 인원으로 대체
- 채용결과는 해당시도 및 통계청으로 통보(2000. 9. 30까지)

❑ 조사원 운영관리

o 수행업무

준비조사(10. 30~10. 31)	본 조 사(11. 1~11. 10)
· 읍면동 공무원의 지도하에 지도원으로부터 조사표류를 수령 · 조사지역을 현지방문하여 조사구 경계를 현지확인	· 현지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 조사진도를 지도원에게 보고(매일) · 작성된 조사표를 지도원에게 내용 확인후 제출(매일)

준비조사(10. 30~10. 31)	본 조 사(11. 1~11. 10)
· 조사구요도 보완 - 경계, 골목길 출입구 표시 완성 · 가구명부 작성 · 가구 일련번호표(스티커) 부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기본정보 수집표 작성	· 전·출입, 누락 및 중복된 가구와 미비된 항목에 대해서는 대상가구를 재방문하여 보완 · 조사표 코딩 ·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최종 완성 · 조사표·가구명부·조사구요도·조사원증을 최종 제출

o 운영관리

- 조사원을 매일 지정된 장소에 집합, 현장조사 수행사항과 일일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
- 조사원의 연락망을 비치하여 수시로 현장수행사항 확인
- 조사원이 조사도중 사고, 기타 사유로 인한 유고가 발생여부를 수시 확인
- 조사원의 유고시 조치사항
  - 읍면동의 장은 지체없이 예비조사원 투입,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에서는 조사원 교체결과를 행정처리하고,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매일 조사원 교체결과(읍면동별 작성)를 통계청에 통보
- 조사원의 수당지급은 조사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다. 지도원 임명 및 운영

❑ 읍면동 통계기능 전환으로 지도원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충실히 조사지도 업무를 수행할 우수 인력 확보

❑ 선발 추천 및 임명

o 임명기한 : 2000. 9. 20까지
o 임명인원 : 읍면동 조사원의 10%(조사원 10명당 1명)
o 선발추천기관 : 읍면동의 장
o 임명기관 :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군구의 장이 임명
※ 기타 채용 임명에 관한 절차는 조사원과 동일함

❑ 채용기간 : 17일간

o 교　　육 : 9. 25 ~ 10. 10일중 2일
o 실사 및 정리 : 10. 28 ~ 11. 11(15일간)

❑ 자격요건

o 읍면동 관내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
o 총조사 기간중 조사 지도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o 조사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통솔력이 있는 사람
o 통·리·반장 및 지역내의 덕망있는 사람

❑ 선발 및 임명

o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군구의 장이 임명
o 기타 임명에 관한 절차는 조사원과 동일

❑ 지도원의 운영관리

o 수행업무

- 조사원 수행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읍면동 공무원의 지휘하에 조사원에 대한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 준비조사 수행사항 점검
- 조사 현장지도 및 불응가구 설득
-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 조사부진 조사원 독려
- 매일 조사표 내용을 확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조치
- 조사원 코딩내용 확인
- 부재가구의 처리
- 담당조사원의 유고사항여부 확인 등

o 운영관리

- 읍면동의 지도공무원은 지도원이 조사지도업무 수행을 수시 확인
- 조사원 유고사항여부를 수시 파악할 수 있는 연락체계 구축
- 조사원이 제출한 부실 조사표에 대한 보완
- 지도원 유고시는 지도공무원이 업무 수행

라. 내검요원 및 내검지도원 모집 및 관리

❑ 읍면동 내검요원 및 내검지도원

o 선발인원

- 내 검 요 원 : 조사구 10개당 1명을 채용
- 내검지도원 : 조사구 50개당 1명을 채용

o 채용기간 : 10일간

- 교육 및 내용검토 : 11. 13 ~ 11. 22(10일간)

o 선발기준

- 총조사 표본조사요원으로 참여한 자
- 내검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고졸수준의 소양이 있고 본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자

o 선발 및 채용

- 읍면동의 장이 가급적 관내 표본조사구 조사원중에서 선발, 채용
- 시군구 및 시도를 경유하여 통계청에 통보

o 수행사항

내 검 요 원	내검지도원
· 조사표 작성 내용에 대한 정확성 검토 · 코딩누락 항목 보완 · 조사구요도, 가구명부, 조사표 내용의 일치성 심층검토 · 조사표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가구 및 조사원을 통해 보완조치	· 내검요원의 지도 및 감독 · 내검항목에 대한 확인 점검

❑ 시군구 내검요원

o 선발인원 : 조사구 25개당 1명 채용

o 채용기간 : 5일간

- 교육 및 내용검토 : 11. 23 ~ 11. 27일(5일간)

o 선발기준 : 읍·면·동 내검요원중 우수인력

o 선발 및 채용

- 시군구에서 선발, 채용
- 시도를 거쳐 통계청에 통보

o 수행사항

- 읍·면·동별 조사구번호 확인(전수, 표본 구분)
- 조사구별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기입상태 확인
- 결번 가구번호 확인
- 누락 및 착오 항목 색출, 보완
- 조사표 편철상태 확인
- 제출서류 확인(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집계표, 조사표 접수대장 등)

❑ 시도 내검요원

o 선발인원 : 조사구 100개당 1명 채용

o 채용기간 : 3일간

- 교육 및 내용검토 : 11. 28 ~ 11. 30일(3일간)

o 선발기준 : 시군구 내검요원중 우수인력

o 선발 및 채용 : 시도에서 자체 선발, 채용하고 통계청에 통보

o 수행사항

- 시·군·구별 조사구번호 확인(전수, 표본 구분)
- 조사표 편철상태
- 외국인 및 빈집조사표 편철상태
- 제출서류 확인(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집계표, 조사표 접수대장 등)

❑ 업무보조요원

o 채용인원 및 기간

- 시　도 : 1명, 10. 30 ~ 12. 9일중 30일
- 시군구(일반구도 배정) : 1명, 10. 25 ~ 12. 2일중 30일
- 읍면동
  · 일 반 지 역 : 1명, 10. 25 ~ 11. 15일중 15일
  · 기능전환지역 : 1명, 10. 16 ~ 11. 25일중 30일

o 선발기준

- 통계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
- 채용기간중 통계업무보조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o 선발 및 채용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자체 선발, 채용
- 시도는 시군구 및 읍면동 채용결과를 통계청에게 통보

o 수행사항

- 조사표류 수불등 지원
- 총조사 업무보조 및 행정지원 등

5. 지도공무원 동원

◇ 총조사는 많은 현장조사인력이 동원되므로 교육, 실사지도 감독하는 지도공무원 동원은 불가피

◇ 지도공무원은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심으로 동원

◇ 동원되는 지도공무원에 따라 역할 분담하여 체계적인 현장조사담당 조사원 관리 필요

o 통계청은 중앙교관단 및 중앙 실사지도 공무원으로 활용

o 지자체는 지방교관단 및 관내 실사지도 공무원으로 활용

❑ 동원인력 현황

	합 계	통 계 청			지방자치단체			
			본 청	사무소		시 도	시군구	읍면동
계	17,003	1,660	470	1,190	15,343	303	4,525	10,515
▷ 교 관 단	1,308	240	170	70	1,068	48	1,020	
· 중앙교관단	240	240	170	70	-	-	-	-
· 지방교관단	1,068	-	-	-	1,068	48	1,020	-
▷ 실사지도반	15,695	1420	300	1,120	14,275	255	3,505	10,515
· 중앙실사지도반	1,420	1420	300	1,120	-	-	-	-
· 지방실사지도반	15,695	-	-	-	14,275	255	3,505	10,515

※ 합계는 연인원임

❑ 동원인력 활용

o 중앙교관단

- 통 계 청 : 240명(본 청 170명, 지방사무소 70명)
- 동원기간 : 9. 18 ~ 10. 28(40일간)

※ 교육대상에 따라 차출인원의 동원기간이 상이함

- 수행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 지도공무원, 지도원의 교육
  · 전국 표본조사구 담당조사원의 교육
  · 인구 30만이상 시의 전수조사구 담당조사원 교육

o 지방(시군구) 교관단

- 시 군 구 : 1,020명(255시군구당 4명)
- 동원기간 : 9. 28 ~ 10. 28(30일간)
- 수행업무
  · 군부지역 전수조사구 담당조사원의 교육
  · 인구 30만미만 시의 전수조사구 담당조사원 교육

o 실사지도 공무원

- 중앙 실사지도반 : 1,420명(본청 300명, 지방 1,120명)
  · 동원기간 : 10. 30 ~ 11. 10(12일간)
  · 수행업무
    ·· 서울지역과 기타지방으로 구분하되, 서울지역은 서울사무소에서 담당
    ·· 조사기간중 현장조사의 지도 관리 및 도출 문제점 해결 등

- 지방실사지도반 :
  - 시 도 255명(시군구당 1명)
  - 시군구 3,505명(읍면동당 1명)
  - 읍면동 10,515명(읍면동당 3명)

  · 동원기간 : 10. 30 ~ 11. 10(12일간)
  · 수행업무
    ·· 관내 지역내 조사기간중 현장조사의 지도 관리 및 도출 문제점 해결 등

6. 교육훈련

◇ 열악한 조사환경에서 총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효율적인 조사원 교육훈련 실시

◇ 효과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는 교육대상별 차별화 및 표준화된 교육 등 다양하고 강도있게 실시

❑ 교육대상에 대한 차별화로 교육효과 극대화

o 교관단, 읍면동 공무원 및 지도원, 조사원으로 나누어 교육

- 교관단은 전달교육할 내용과 교관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교육
- 읍면동 공무원 및 지도원은 조사원 관리, 현장지도 등 위주로 교육
- 조사원은 현장조사방법 및 코딩, 자료보완 등 조사표 작성에서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반사항을 교육

o 특히 금번 총조사는 지도원 역할이 강화되므로 지도원의 교육강화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합동교육 실시

- 읍면동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조사원 관리 능력 배양

o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담당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

- 전수담당 조사원은 1일간 교육, 표본담당 조사원은 2일간 교육

o 교육단계 및 교육대상 등

교육단계 및 교육대상		교 관	교육기간	주요교육내용
▷ 교관단	· 중앙 교관단 (본청+지방사무소)	인구조사과 기획사무관	3일간	· 총조사 실시계획 · 지도요령 · 조사요령 · 교육요령 · 행정처리사항 · 기타참고사항
	· 시군구 교관단	중앙교관단	2일간	

교육단계 및 교육대상		교 관	교육기간	주요교육내용
▷ 읍면동공무원및 지도원	· 읍면동 공무원 + 지도원	중앙교관단	2일간	· 지도요령 · 조사요령 · 행정처리사항 등
▷ 조사원	· 전수조사원 + 업무보조원	중앙교관단 및 전교관단	1일간	· 조사요령
	· 표본조사원 + 예비조사원	중앙교관단	2일간	· 조사요령

※ 시도 교관단은 통계담당과장, 통계계장 및 실무자로 구성되며, 통계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교육 실시(3일간)

※ 기능전환이 안된 읍면동의 업무보조원은 읍면동 자체 교육 실시

❑ 다양한 교재 및 기자재 개선 등 교육환경 조성

o 교육대상에 적합하게 조사지침서를 다양화(95년은 1종)

- 조사원용은 최대한 경량화하여 교육 부담을 경감
- 읍면동 직원 및 지도원용은 상세한 내용을 수록
- 중앙 및 시군구 교관단용 교안 지침서를 별도 제작

o 조사지침서 내용 개선

- 면접기법, 항목별 조사사유 등 실제적 현장조사에 활용되는 분야로 개편
- 과거 총조사 및 시험조사 등에서 나타난 사례 중심으로 작성

o 보조교육용품 제작, 활용으로 교육효과 제고

- 거처의 종류 등 그림 또는 도표가 필요한 내용을 표준화, 제작 활용
- 교육내용을 단순하고 시각적으로 전달

o 시청각교재 개선

- VTR에 의한 교육시간 연장(95년 40분→2000년 표본 120분, 전수 90분)
- VTR 종류 구분 : 95년 1종 → 2000년 2종(전수, 표본)
- VTR은 단원별(10분내외)로 편집, 순차적 방영(강의→방영→강의)으로 운영

- VTR 편성시간(안)

	전 수	표 본
·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15분	15분
· 조사대상 및 준비조사	15분	15분
· 인구에 관한 사항	20분	30분
· 가구, 주택에 관한 사항	20분	30분
· 코딩, 내검, 조사표제출	20분	30분
계	90분	120분

o 시군구당 교육대상인원에 따라 교육장소를 시군구에서 사전 확보토록 추진(5월중)

- VTR상영 및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
- 가능한 쾌적하고 교통 및 주차가 편리하고 용이한 지역

o 교육장소당 교육대상인원이 가급적 80명내외가 되도록 배정

- 교육대상이 과소한 지역은 통계청에서 인근지역과 통합, 조정

❑ 조사원교육의 내실화 도모

o 금년도 총조사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여 조사원의 참여정신 적극 유도

o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부담을 최소화

- 조사원 지침서는 조사에 필수적인 사항만 수록, 분량을 최대한 경량화

o 조사현장 적응능력 배양으로 조사의 정확성 제고

- 종전 조사항목 설명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조사현장 중심 교육
  · 조사표 배부 및 회수·불응가구 설득 및 부재가구 조사 등 가구면접 기법 중점
  · 부실조사표의 보완 요령, 코딩·내검 및 조사표 정리요령 등

- 각종 조사용품류 사용을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 등

o 조사원의 흥미와 관심 제고

- 조사표 작성실습을 교육내용 설명전에 실시하여 조사원의 흥미 유발함으로서 교육효과 제고
- VTR(표본 120분, 전수 90분)을 이용한 시청각 기자재 삽입으로 교육수단을 다양화
- 95년 사례발표를 통한 간접적인 현장조사 경험 습득 및 배양

o 총조사 홈페이지의 적극 활용

- 홈페이지에 현장조사 사례와 질의응답 등 마련, 수시 활용

❑ 표준화된 교육실시로 조사편차의 최소화

o 교관요원의 개인적 차이에서 오는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최대한 표준화

- 교관용 표준 교안에 따른 교육실시로 통일된 내용 전달
- 교육시간 및 기일을 엄수하여 부실 교육 방지
  - 특히 표본조사원 교육시 2일일정을 1일에 마치지 않도록 관리
- 시청각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표준화된 내용을 교육
  - 설명한 내용을 VTR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 조사원 교육 표준시간표

	전 수	표 본
· 개식, 국민의례, 인사말	20분	20분
· 홍보용 VTR 방영	10분	10분
· 조사표 작성 실습	30분	40분
· 조사개요, 조사방법	50분(VTR 15분)	50분(VTR 15분)
· 조사대상, 준비조사	50분(VTR 15분)	50분(VTR 15분)
· 인구에 관한 사항	80분(VTR 20분)	110분(VTR 30분)
· 가구, 주택사항	80분(VTR 20분)	110분(VTR 30분)
· 코딩, 내검, 조사표정리	80분(VTR 20분)	110분(VTR 30분)
· 산업 및 직업	-	50분
· 사례발표	30분	30분

※ 조사원 안전대책에 관한 교육은 조사개요 시간에 포함

❑ 중앙 교관요원의 정예화로 교육 내실화

o 통계청 중앙교관요원은 자질있는 직원을 엄선, 정예화

- 시군구 교관요원, 읍면동 공무원 및 지도원, 조사원(표본) 및 인구 30만이상 시의 1차 교육을 전담
- 2차 전달 지방 교관요원의 교육내용 충실화

o 선발기준은 과거 총조사 유경험자 및 각종 통계조사 유경험자중 우선 선발

❑ 교육·훈련 대상인원 및 기간(예정)

	중앙교관단	시군구 교관단	읍면동·지도원	조사원
대상인원	240명	1,020명	19,228명	130,825
교육기간	9. 4~9. 9 1차 9. 4~9. 6 2차 9. 7~9. 9	9. 18~9. 23 1차 9. 18~9. 19 2차 9. 21~9. 22	9. 25~10. 10 1차 9. 25~9.26 2차 9. 28~9.29 3차 10. 5~10. 6 4차 10. 9~10.10	10.16~10. 28 전수 1일 표본 2일 (예비조사원은 표본교육)
비 고		시군구당 4명 (255시군구) ·일반구포함	읍면동 7,010명 (3,505읍면동) 지도원12,218명 (조사원10명1명)	전수 100,000명 표본 27,320명 예비 6,089명 업무보조원 3,505명

※ 업무보조요원은 채용일수에 교육 포함하고 중앙 실사지도반의 편성 및 교육은 10월 중순경 실시 예정임

❑ 단계별 교육시간표 : 붙임

7. 조사표류 및 기자재 제작·배포

◇ 총조사의 조사표류는 다양한 종류, 많은 물량 및 배부처의 광범위 등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 조기 확보

◇ 금번 조사용품류는 통계청의 일괄 발주를 지양하고 일부 조사용품은 지방 분산 제작하여 예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본방향

o 총조사 단계별 업무에 필요한 조사용품류는 사전 현장(읍면동 등)에 배포, 철저한 조사준비

o 조사표 등 용적이 큰 조사표류는 16개 시도에 분산 제작하며 통계청은 배부가용이한 조사용품류만 발주하여 시도로 직접 발송

o 각종 조사용품류 및 기자재에는 심볼마크 및 로고 활용

o 조사용품류별로 적정 소요량을 산출, 과잉 공급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 배부기준

o 소요량을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별로 산출

o 예비물량은 소요량의 10%~30%내외 배부

※ 조사표류 배부계획을 별도 작성 통보

❑ 배부체계

o 통계청 발주

- 통계청 ⇨ 시도(또는 시군구) ⇨ 시군구 ⇨ 읍면동

o 지방분산 발주

- 시 도 ⇨ 시군구(또는 읍면동) ⇨ 읍면동

※ 지방분산 조사표류는 「전수조사표」「표본조사표」「가구홍보용전단」「가구기입요령」의 4종으로 통계청에서 일괄 발주, 16시도 분산 제작예정임

❑ 추진일정

o 조사용품별 발주 : 2000. 5~7월
o 납　품　　: 2000. 8. 10까지
o 분　류　　: 2000. 8. 11~8. 20
o 배　부　　: 2000. 8. 21~8. 31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분야별 계획》 ①종합시행계획 ②인력동원 및 훈련계획 ③홍보계획
④조사표류 배부계획 ⑤표본조사구 일람

《홍　　보》 ①담화문 ②포스터(3종) ③교육용VTR ④입간판 선전문
⑤홍보용 팜플렛 ⑥홍보자료집(3종) ⑦차량용 스티커
⑧홍보용 비디오 ⑨ BI 자료집 ⑩ 슬로건 ⑪ 가구전단⑫지역전단

《조사원채용》 ①조사원 모집공고문 ②조사원 및 지도원 등록명부
③조사원 및 지도원 추천명부 ④조사원 서약서
⑤조사원 임명장 ⑥조사원 출근부 ⑦조사요원증
⑧조사요원 마크

※ 통계청에 제출해야 할 서식 : ③

《준비조사》 ①가구명부 ②가구명부 간지 ③가구명부 표지
④조사구요도 ⑤ 조사구요도 ⑥ 조사구요도 표지 ⑦ 가구 스티커
⑧ 조사지침서(전수, 조사원용) ⑨ 조사지침서(표본, 조사원용)
⑩ 조사지침서(지도원용) ⑪ 조사표 기입요령(전수) ⑫ 조사표 기입요령(표본) ⑬공동주택 기본정보수집표 ⑭공동주택 기본정보수집표 간지 ⑮공동주택 기본정보수집표 표지 ⑯조사원 연락전 ⑰ 비밀보호용 봉투 ⑱ 조사원가방 ⑲ 받침대(화일) ⑳ 연필 ㉑ 지우개 ㉒ 볼펜(2종) ㉓ 지도 수첩 ㉔ 조사구요도 보완 지침서

※ 통계청에 제출해야 할 서식 : ①~⑥, ⑬~⑮, ㉓

《본 조 사》 ①일반조사표(전수) ②일반조사표(표본) ③외국인조사표 ④빈집조사표 ⑤일반조사표 표지(표본) ⑥외국인 및 빈집 조사표 간지 ⑦각종분류부호집 ⑧ 산업 및 직업분류집

※ 통계청에 제출해야 할 서식 : ①~⑦

《내검·제출》 ①집계표 디스켓 ② 접수대장(읍면동용) ③접수대장(시군구용) ④접수대장(시도) ⑤ 조사표 회수용상자(전수) ⑥ 조사표 회수용상자(표본) ⑦외국인 및 빈집조사표 표지내용 ⑧검토 지침서

※ 통계청에 제출해야 할 서식 : ①~⑦

《특별조사구》 ①특별조사구(교도소용) ② 특별조사구(군,전경대용) ③특별조사표(재외공관용) ④특별조사표 표지 ⑤ 특별조사구 조사표 회수용상자 ⑥ 조사표 접수대장 ⑦ 특별조사구 조사지침서

※ 통계청에 제출해야 할 서식 : ①~⑥

8. 홍 보

◇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 최근 맞벌이 및 1인 가구 등 주간 부재가구 증대에 따른 조사환경이 열악하여 현장조사의 곤란 예상

◇ 총조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참여하에 실시되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 실시

❑ 최근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홍보수단을 다양화

o 새로운 심볼마크, 마스코트 등 BI(Brand Identity)를 제작, 활용

- 조사표, 스티커 등 모든 총조사 유인물에 삽입 활용

o 인터넷에 의한 홍보 및 의견반영 실시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개설(www.nso.go.kr/census2000)
- 일선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 등 총조사관련자와 실시본부간 대화채널을 위한 「총조사 대화의 장」 마련, 의견교환 및 반영
- 총조사 해설, 조사사례, 조사원모집, 자료이용 등

o 조사표 작성요령에 대한 수신자 부담 안내전화 설치 : 080-527-2000서비스

- 본청 및 지방사무소에 총조사용 안내서비스용으로 확보

❑ 선진 홍보기법 도입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o 민간부문의 홍보기법 도입으로 고품질의 홍보물 제작

- 민간 홍보전문가에 의한 홍보컨설팅 및 홍보물 기획 등

o 교육·계도 프로그램 확대

- 교육용 비디오 제작 : 전수(90분), 표본(120분)용으로 구분 제작
- 홍보용 비디오 제작 : 5~10분 정도

❑ 연령 및 계층 등 target group별로 홍보수단을 특화

o 학생층 : 홍보책자, 학생용 팜플렛, 인터넷 캠페인, 이벤트 등
o 주간부재가구 : 심야 방송(TV, 라디오), 가구전단 등
o 외국인 : 영자신문, 팜플렛 및 포스터 등

❑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홍보 실시

o 홍보준비 및 여건조성(1단계)

-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 2000. 2~11월
- 전문업체 활용 홍보물 제작 : 2000. 2~7월
- 홍보 모니터 요원 구성 및 운용 : 2000. 5~11월

o 참여분위기 조성(2단계)

- 명함제작, 배포 : 2000. 4월
- 청내 총조사 설명회 개최 : 2000. 5월
- 080 서비스 개시 : 2000. 9~11월
- 포스터 및 슬로건 현상공모 실시 : 2000. 5월
- 언론기관 총조사 설명회 개최 : 2000. 9~10월

o 집중홍보(3단계)

- TV, 라디오, 유선방송 홍보 : 2000. 10~11월
  · 캠페인, 대담 및 해설방송, 스파트 광고, 자막방송 등
- 신문광고 : 2000. 8~11월
  · 조사원 모집, 담화문 및 실시공고문 공고 등
- 가두설치물 홍보 : 2000. 10~11월
  · 입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선전탑, 문자전광판 등
- 게시물 홍보 : 2000. 10~11월
  · 대국민 담화문(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포스터, 슬로건 등

- 대중교통수단 홍보 : 2000. 10~11월
  · 전철, 버스, 기차 등
- 홍보이벤트 : 2000. 9~11월
  · 가두캠페인, 기념엽서 등

❑ 지방 홍보체계 구축 및 활성화

o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 실시

- 지역언론인 총조사 설명회 개최
- 포스터 입선작 순회 전시회 실시
- 지역 이벤트 유도 : 글짓기, 미술대회 등

o 홍보예산 지원 : 세부내역은 별도 통보

o 자체 지역 홍보실시 강화

- 시·도 자체 홍보계획 수립 및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 실시
  · 지방방송, 유선방송, 반상회, 자체 홍보물, 마을방송, 기타

- 시·도 자체 홍보 자문위원회 구성

9. 실지조사 및 지도

◇ 전국 4,700만명, 1,480만 가구 및 1,100호 주택을 짧은 기간에 정확히 조사 완료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인력 동원 투입

◇ 동원되는 만6천 공무원과 14만여 조사원 인력이 실지조사 기간에 현장 조사 및 실지조사 지도를 차질없이 수행

❑ 실지조사 및 실지조사지도 기간

o 준비조사 : 2000. 10. 30 ~ 10. 31(전수 1일, 표본 2일)

o 본 조 사 : 2000. 11. 1 ~ 11. 10(10일간)

❑ 실지조사

o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조사원이 배정된 조사구에 대해 현장 실지조사 이전에 수행사항을 확인

- 준비조사기간에는 조사구의 경계, 누락 가구 등 우선 확인
- 담당조사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개인별 계획 수립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정보를 사전 파악, 활용 등

◇공동주택 기본정보 활용방법◇

· 수집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 수집기간 : 준비조사 기간중
· 수집내용 : 상수도시설, 거처의 종류, 연건평, 총방수, 건축년도, 편익시설수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
※공동주택이라도 가구별로 수집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 수집방법 :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택사정을 잘 아는 주민
· 활용방법 : 수집된 내용은 사전에 조사원이 조사표 항목에 기입하여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거나 면접조사
※ 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구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o 조사원은 담당조사구의 조사방법에 따라 각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

- 응답자 기입방식인 아파트 조사구의 전수조사담당 조사원은 조사표를 배부, 조사표 작성
  · 조사표 배부시 조사대상 및 기입요령 등 설명
  · 조사표 회수시 가구(원)의 누락 및 중복여부, 착오기입, 기입누락 등 내용 확인
- 아파트 조사구(전수조사)이외 모든 전수 및 표본조사 담당조사원은 현지에서 직접 조사표 작성

o 조사원은 조사구내 가구 및 인구에 대해 누락·중복 및 착오가 없도록 조사 완료되도록 현장조사에 전념

o 조사원이 조사구내의 맞벌이 및 1인가구 등 부재가구에 대해 야간방문 등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원 등 적극 지원

- 야간방문으로도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도원 책임하에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조사
- 비밀보호용봉투 및 조사원 연락전을 필히 활용, 조사
  · 조사표 회수시 응답자 기입방식 적용요령에 의거 내용 확인
  · 조사된 내용중 착오부분은 반드시 전화나 재방문하여 보완

❑ 실지조사 지도

o 조사원의 실사지도는 중앙 및 지방 실사지도반과 지도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

- 중앙실사지도반은 16개시도의 총책임관을 지정하고 우선 대도시등 시부지역에 담당책임자를 중점 배치
  ※ 군부지역은 나머지 가용인력에서 배치 운영
- 지방실사지도반은 중앙실사지도반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시군구에 담당책임자를 지정 운영
- 읍면동 기능전환 시군구는 읍면동별로 배치하는 지도공무원을 사전 지정 운영

o 각 실사지도반의 지도공무원은 담당지역별로 실사지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 유지

- 중앙실사지도반은 16개시도의 지방실사지도반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실사기간중 도출되는 문제점을 현지 해결
- 시군구 및 읍면동 지방실사지도반 지도공무원은 실사기간중 매일 조사상황을 파악, 운영

[지도공무원별 주요 수행업무]

중앙실사지도공무원	지방실사지도공무원	
	시도·시군구	읍 면 동
· 조사원, 지도원 및 시도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수행 확인 및 협조 · 현지조사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대안모색 · 각종 조사표류 수급량 파악, 부족분에 대한 조치 등	· 조사부진 지역에 대한 독려 · 탁상조사 방지 및 예방대책 · 일정별 조사추진내용 확인 · 각종 조사표류 작성상태 확인 및 지도 · 관할 지도공무원의 업무 수행상태 확인 · 조사진척상황 보고 등	· 조사원, 지도원 관리 · 중복·누락 및 착오조사 방지 · 조사상 어려운 문제점 해결 · 비협조 가구 및 불응가구 설득 · 조사진척상황 보고 · 대국민 홍보활동 등

o 읍면동의 지도원은 최일선 실사지도인력으로 담당조사원의 관리 및 지도에 중점을 두어 역할 수행

- 지도공무원과 수시 협의하여 현장조사상 어려움을 해결
- 특히 중도포기 조사원 조기발견, 일일 조사진행 사항 파악 등

◇ 지도원 중점수행사항 ◇

▷ 조사원 관리
- 조사원에 대한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 일일 조사진도 점검
- 중도포기 조사원 조기발견 및 읍면동 보고 등

▷ 조사원 지도
- 불응가구 및 비협조 가구 설득
- 조사표류 작성상태 점검(매일)
- 착오 조사표에 대한 재조사 지도
- 조사진도가 부진한 조사원 지원 및 독려
- 조사원 수행업무에 대한 현장지도 등

▷ 중점수행사항
- 교육받은 조사원이 실제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기간중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
- 교육받은 조사요령에 따라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
- 일정별 수행업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여부
- 부재가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애경사 등으로 조사업무 수행하지 못하는 조사원 발생여부
- 가구방문시 응답가구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지 여부
- 현장조사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조사원이 감추고 있는지 여부
- 조사목적이외의 활동(종교, 판매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결과 알게 된 가구나 개인의 비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
- 기존의 기록에 의해 탁상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책임있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지 여부
- 응답 거부하는 가구를 지도원에게 제대로 보고하는지 여부
- 조사원증을 제대로 패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실지조사 상황 보고체제 구축

o 지방실사지도반의 지도공무원 지정 통보

- 16개시도는 지방실사지도 공무원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에 통보 (8. 31)
- 특히 기능전환 읍면동의 경우 시군구의 전진배치 인원을 읍면동별 사전 지도공무원으로 확보 조치

o 전국의 실지조사 상황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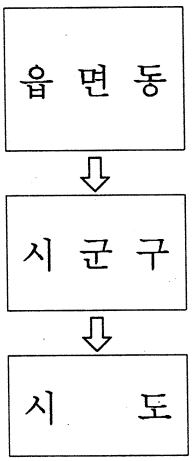

· 지도원은 매일 오후 5시까지 조사원을 소집(또는 전화 등)하여 조사구별로 진도를 파악하고 오후 6시까지 읍면동에 보고, 읍면동은 그 결과를 취합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시군구에 보고

· 읍면동별로 진도를 파악, 그 결과를 오후 7시 30분까지 시도에 보고

· 시군구별로 진도를 파악, 익일 오전 9시까지 통계청에 통보

※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서는 총조사 상황판 및 상황일지을 비치하여 관리(서식 별첨)

10. 조사표 부호기입 및 내용검토

◇ 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조사항목의 누락, 관련항목간 불일치 및 착오기입 등 누락, 중복 해소를 현장조사구에서 최대한 보완

◇ 조사원의 제출된 조사표에 대해 단계별 내용검토를 실시, 부실한 조사사항은 시의성있는 현지에서 보완, 조사자료의 완전성 확보

❑ 조사표 부호기입

o 조사표의 부호기입은 조사원이 기입 원칙

- 부호기입 대상항목은 7개 항목임
- 성씨 및 본관, 출생지, 1년전 및 5년전 거주지, 통근학장소, 행정구역

o 부호기입의 종류가 많고 어려운 항목(산업, 직업)은 통계청 지방사무소 직원이 기입

o 조사표 부호기입의 기입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원은 부호기입항목에 대한 확인 강화

- 담당조사원 상호간 부호기입 확인
- 지도원이 담당조사원의 조사표 부호기입을 표본추출 확인 등

❑ 조사표 내용검토

o 조사원의 조사표 내용검토는 조사자로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조사사항이므로 항목의 누락, 착오기입 여부 등 면밀히 검토후 조사표 제출

o 지도원은 조사원의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 현장조사구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 조사기간중 보완사항은 담당조사원이 수행, 보완
- 조사기간이 지난 부실 조사표는 지도원이 현지 방문 보완

o 내검요원은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별로 운영하되, 조사구 기준으로 내검요원 배정

- 읍면동 내검요원은 조사표상 부호기입의 정확성, 항목누락 및 중복 및 관련항목간 불일치 등을 검토 확인
- 읍면동 지도공무원은 미비된 조사표를 현지에서 보완 조치
- 시군구 및 시도 내검요원은 읍면동에서 제출된 조사표의 매수, 가구명부와 조사표 대조 등 수행

[내검기간 및 인원 등]

	읍면동	시군구	시 도
교 육	11. 13	11. 23	11. 28
내용검토 기간	11. 13~11. 22(10일)	11. 23~11. 27(5일)	11. 28~11. 30(3일)
내용검토 인원	내검요원:10조사구당 1명 내검지도원:50조사구당 1명	25조사구당 1명	100조사구당 1명

❑ 내용검토 지도

o 부실 조사표의 내용 보완을 현지에서 정확히 하기 위하여 읍면동 내용검토 기간중 지도

- 통계청 인력은 가급적 조사의 착오가 많고 조사표 보완이 어려운 취약한 시부 지역에 집중 배치
- 시도 및 시군구의 인력은 군부지역을 담당하되, 통계청에서 담당하지 못한 일부 시부지역도 담당

o 읍면동의 내용검토 지도는 1인당 지도공무원이 담당할 지역을 사전 선정하여 책임하에 운영

- 통계청은 본청 및 지방사무소 가용인력을 전원 동원
-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 실사지도반 인력을 동원

11. 조사표류 제출 및 접수

◇ 조사표류의 제출 및 접수는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에서 내용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주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도록 추진

◇ 읍면동별 전산입력한 집계표는 디스켓 또는 이메일 전송하여 총조사의 잠정집계결과 공표일정을 최대한 단축

❑ 기본방향

o 16개 시도별로 조사표류를 추진일정에 제출 및 접수

-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의 단계적으로 제출 및 접수
- 시군구단위로 접수

o 전수 및 표본조사표 등 조사표류는 시도소재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접수

❑ 제출 및 접수 사항

o 제출 및 접수절차

- 읍면동 제출⇨ 시군구 접수 및 제출⇨ 시도 접수 및 제출⇨ 통계청 접수

o 제출 및 접수 처리과정

- 각 시도(또는 시군구)는 시군구(읍면동)별로 작성한 접수대장을 기초로 조사표류 확인후 접수
  - · 전수 및 표본조사표는 분리하여 접수
  - · 전수조사표를 먼저 접수한 후 표본조사표 접수
  - · 행정구역별(읍면동, 시군구)의 조사구 번호, 가구번호별로 편철 접수
- 시군구의 조사표류 접수시 전산입력된 집계표의 디스켓, 외국인 및 빈집 조사표를 통계청(소재 지방통계사무소)에 제출
  - · 전산입력 집계표 디스켓은 별도 송부
  - · 부득이 하여 제출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이메일 전송

- 각 시도는 전수 및 표본조사표 등 조사표류를 시도소재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에 제출

- 조사표류의 제출 및 접수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하기 위하여 통계청(본청)에서 감독관 파견, 확인

❑ 조사표류 접수일정

o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에서 내용검토 완료후 단계적으로 제출 및 접수

	읍면동	시군구	시 도
제출 또는접수일정	11. 23~11. 24제출	11. 23~11. 24접수 11. 28~11. 29제출	11. 28~11. 29접수 12. 1~12. 7제출

o 각 시도별 조사표류 제출장소 : 시도청 소재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

❑ 제출(또는 접수) 조사표류 : 6종

o 조사표 접수대장, 전수 및 표본조사표, 조사구요도, 가구명부, 집계표

12. 사후조사

◇ 총조사 실시 직후에 조사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측정하고, 조사 누락 및 중복 등 오차 발생 요인을 분석,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

❑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o 조사기준시점 : 2000. 12. 1. 0시 현재
o 조 사 기 간 : 2000. 12. 1~12. 10(10일간)

❑ 조사규모 : 600조사구(총조사구의 0.24%)

❑ 동원인력 :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 조사직원(600명)

❑ 조사방법

o 본조사의 조사내용(11. 1기준)을 확인하는 종속조사방법으로 실시
o 조사원에 의한 면접방식 조사

❑ 조사항목 선정

o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및 상주여부 등 인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o 전출입시기, 거주기간 및 거처종류 등 가구 및 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조사결과 활용

o 2000 인구주택총조사의 완전성과 정확성 측정, 활용
o 조사 누락 및 중복의 근원을 분석, 차기 총조사 개선자료로 활용

13. 종합평가 및 포상

◇ 총조사는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동원, 전국의 지방행정조직 동원등 국가적 사업으로 성과 측정을 위한 종합평가 실시

◇ 종합평가에 따라 실시기관 및 총조사 종사자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 유도

❑ 기본방향

o 실시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o 총조사 실시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
o 조사의 정확성과 완전성 제고를 위한 실시기관 및 종사자 발굴
o 포상범위를 조사원 및 지도원 포함한 총조사 참가 종사자로 확대
o 포상훈격 및 인원을 확대하여 총조사 종사자의 사기진작

❑ 평가시기 : 2001. 4월경

❑ 평가기준 및 방법

o 평가기준 및 방법을 기관 또는 개인로 별도 마련
o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평가결과 조치

o 유공 기관 및 개인은 포상
o 부실 기관 및 개인은 상급기관 통보 또는 징계 요구

❑ 포상계획

o 통계청은 총조사에 참여한 전국 실시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 주관
o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는 총조사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

o 포상훈격 및 인원

[유공기관]

	계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시 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기관수	3,776기관	16 기관	16 기관	255 기관	3,505 기관
포상기관수	147	1	2	48	96
훈 격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무총리표창 16 재경부장관표창 80

※ 각 시도별 시군구 3개기관, 읍면동은 6개기관으로 산정

[유 공 자]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재경부 장관표창	통계청장 표 창
계	2,724	4	6	27	29	1,199	1,459
공 무 원	1,224	4	6	26	27	1,032	129
조사요원	1,429	-	-	-	-	99	1330
유관기관	71	-	-	1	2	68	-

※ 95년 포상대비 1.5배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훈격 및 인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후 확정 시행예정임

※ 조사요원은 조사원과 지도원이며, 성실한 조사로 누락 등 착오가 현저히 적은 조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에 따라 조사구의 0.5% 산정(청장 표창)

❑ 부실조사 지역 조치

o 대 상

- 중앙실사지도반의 실사지도에서 탁상조사 적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 조사 징후가 있는 행정기관
- 총조사의 본조사기간중 자체 실사지도 미흡으로 조사불량이 예상 또는 판단된 행정기관

o 시 기 : 2000. 12 ~ 2001. 3

o 확인결과 조치

- 조사 누락 및 중복 : 관련기관에 징계 요구
- 탁상조사등 허위 조사 : 지휘감독 책임에 중점을 두어 관련법에 의거 조치

14. 조사결과공표 및 종합분석

◇ 총조사 결과의 신속한 활용을 위하여 PC에 의한 키엔트리 방식으로 지방분산 입력, 자료처리하여 시의성 제고

◇ 수작업에 의존한 집계방식을 전산입력한 디스켓(F/D) 및 인터넷을 이용한 이메일 제출로 잠정집계결과 조기 공표 등

❑ 잠정집계결과 공표

o 공표시기 : 2000. 12월 하순

o 집계자료 : 읍면동 및 시군구별 인구, 가구 및 주택수

※ 특별조사구의 조사표는 집계하여 해당 행정지역에 인구를 합산

o 자료제공방법

- 보고서 발간 배포 : 6,000부
- Compact Disk(CD-ROM) 및 인터넷으로 제공

❑ 전수집계결과 공표

o 공표시기 : 2001. 9월

o 집계체계 : 전국편, 시도편 등 행정지역별, 특성별로 집계

o 수록자료 : 인구,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전수항목(단 성씨 및 본관제외)

o 자료제공방법

- 보고서 발간이전에 CD-ROM 및 인터넷 등으로 제공
- 보고서 발간 배포 : 16,500부

❑ 표본집계결과 공표

o 공표시기 : 2001. 12월

o 집계체계 : 전국편, 시도편 등 행정지역별, 특성별로 집계

o 수록자료 : 인구이동, 경제활동 등 표본항목

o 자료제공방법

- 보고서 발간이전에 CD-ROM 및 인터넷 등으로 제공
- 보고서 발간 배포 : 3,500부

❑ 성씨 및 본관 조사결과보고서 공표

o 공표시기 : 2002. 6월

o 집계체계 : 전국편, 시도편 등 행정지역별로 집계

o 수록자료 : 성씨 및 본관

o 자료제공방법

- 보고서 발간이전에 CD-ROM 및 인터넷 등으로 제공
- 보고서 발간 배포 : 3,000부

❑ 조사결과 종합분석

o 분석기간 : 2001. 10~2002. 9

o 분석내용

- 출생지, 거주지, 인구분포 등 인구특성에 대한 인구학적 심층 분석
- 인구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종합 분석

o 분석방법 : 학계 또는 전문가에 용역의뢰

o 분석결과 활용방안

- 관련 정책부서에 제공, 계획수립 등 활용
- 다음 총조사의 개선 자료로 활용 등

Ⅵ. 행 정 사 항

◇ 총조사의 체계적인 실시 및 차질없는 조사수행을 위하여 통계청과 실시기관간 긴밀한 연락 및 통보 체제 구축

◇ 총조사의 조사관련 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부진업무 독려, 기한내 추진 및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 등 조사수행에 대한 종합상황실 운영

❑ 자체 계획수립 시행

o 통계청의 「종합시행계획(안)」을 토대로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수립 시행

o 각 시도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자체 계획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지도 감독

❑ 추진상황실 설치 운영

o 설치기간 : 2000. 9~11. 30

o 설치기관 :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o 수행사항

- 관내 총조사의 추진진도 파악하여 조사기한내 조사완료
- 부진 조사구 독려, 조사원 유고 및 부재가구 해결 등 신속히 대처
- 조사수행에서 나타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 해결 등

※ 상황실 운영요원은 별도 지원없이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담당공무원과 업무보조요원으로 운영

❑ 조사원 등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장 조기 선정 통보

o 선정방향

-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기자재(비디오 상영, 마이크 등) 사용이 가능한 장소
- 자가운전에 따른 주차장 공간 및 교통이 편리한 장소
- 교육장소내에 교육생이외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이 없는 장소 등

o 수용인원 : 교육대상인원 8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정

o 보고(또는 통보)체계

- 구시군 : 2000. 7. 31일까지 시도 보고
- 시 도 : 2000. 8. 15일까지 통계청 통보

o 서식 : 붙임 참조

❑ 조사요원 채용결과 보고

o 조사원 및 지도원 : 2000. 9. 30까지 통계청에 통보

※ 조사원에는 예비조사원(5%)도 포함됨

o 내검요원 및 내검지도원

- 읍면동 : 2000. 11. 11까지 통계청 통보
- 시군구 : 2000. 11. 23까지 통계청 통보
- 시 도 : 2000. 12. 2까지 통계청 통보

o 업무보조원

- 읍면동 : 2000. 10. 15까지 시군구 보고
- 시군구 : 2000. 10. 20까지 시 도 보고
- 시 도 : 2000. 10. 30까지 통계청 통보

o 서 식 : 별도 인쇄 배부

❑ 지도공무원 지정 결과보고

o 지도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별로 지정 운영

o 보고체계

- 읍면동 : 2000. 9. 10까지 시군구 보고
- 시군구 : 2000. 9. 20까지 시 도 보고(읍면동 포함)
- 시 도 : 2000. 9. 30까지 통계청 통보(시도, 시군구 및 시도)

o 서 식 : 붙임 참조

❑ 조사원 교체명단 취합 통보

o 총조사 기간중 교체된 조사원 명단을 시도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별로 취합

o 2000. 11. 15까지 통계청으로 통보

❑ 조사결과 집계표 및 전산입력 디스켓 제출

o 제출기한 : 2000. 11. 23까지

o 제출방법

- 읍면동의 내검기간이 끝나면 집계표에 의해 전산입력한 디스켓을 제출
- 기한내 집계표의 전산입력이 완료되지 않으면 통계청으로 이메일 전송

o 제출장소 : 시도 소재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

[붙임 3]

2000 인구주택총조사

지도공무원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 행정구역 (조사구 번호)	지 도 공 무 원			비 고
	소 속	직급(또는직위)	성 명	

[작성방법]

- o 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지도공무원 지정
- o 시군구에서는 읍면동별로 지도공무원 지정
- o 읍면동에서는 조사구별로 지도공무원 지정
- o 비고란에는 전수 또는 표본 조사구 등 조사구 특성을 기입(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명칭도 기입)
- o 2000. 9. 30까지 통계청 통보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 원 교 체 결 과 보 고

조사구 번 호	최초 채용 조사원			교체된 조사원			교체사유	조사구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작성방법]

- o 조사구번호는 교체된 것에 한함
- o 교체사유는 「1. 중도포기 2. 불의의 사고 3. 허위조사 4. 기타」로 하며, 숫자기입
- o 조사구분은 조사구번호에 따라 「1. 전수 2. 표본」로 하며, 숫자 기입
- o 2000. 11. 15까지 통계청 통보

[붙임 4]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현황(상황판)

○○시 도 · ○○시군구 · ○○읍면동

구 분	조사구수	대 상		11. 1			· · · · · · · ·	11.10			최종누계		
		가구	인구	가구	인구	진도		가구	인구	진도	가구	인구	진도

[작성방법]

- o '구분' 란은 읍면동은→채용 조사원명, 시군구→관내 읍면동명, 시도→관할 시군구명, 통계청→시도명을 기입
- o '조사구수' 란에서 읍면동만 조사원의 조사구번호를 기입
- o '대상' 란은 준비조사시의 가구명부에 있는 가구 및 인구 숫자를 기입
- o '조사실적' 란의 일별 실적은 전일 수치를 포함하여 <누계>를 기입
- o '진도'는 조사실적 인구수/대상인구수×100%로 진도율을 계산

2000인구주택총조사 기본현황

○○시 도 · ○○시군구 · ○○읍면동

행정구역	조 사 구 수							조사원수		지도원수	내검요원수	비고
	계	아파트조사구 (A)	보 통 조사구 (1)	섬 조사구 (2)	기숙시설 조사구 (3)	특수사회시설조사구 (4)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 지역조사구(5)	전 수	표 본			

※ 설치기간은 조사원 교육시부터 내검완료시까지(2000. 10. 12~12. 9)

[붙임 5]

단계별 교육일정

□ 중앙교관단 및 시도교관단 교육

시 간	소요분	교육내용	비 고
<첫째날>			
08:40 ~ 09:00	20분	· 참석자등록	
09:00 ~ 09:50	50분	· 개식, 청장 당부말씀	
10:00 ~ 10:50	50분	· 총조사 실시계획	
11:00 ~ 11:40	40분	· 조사표(표본)작성(실습)	
(12:00 ~ 13:00)	(60분)	(중식)	
13:00 ~ 13:50	50분	· 조사개요, 조사방법	· VTR 15분 포함
14:00 ~ 14:50	50분	· 조사대상, 준비조사	· VTR 15분 포함
15:00 ~ 16:50	110분	· 인구에 관한 사항(표본)	· VTR 30분 포함
<둘째날>			
08:40 ~ 09:00	20분	· 참석자등록	
09:00 ~ 09:50	50분	· 사회통계국장 당부말씀	
10:00 ~ 11:50	110분	· 가구, 주택사항(표본)	· VTR 30분 포함
(12:00 ~ 13:00)	(60분)	(중식)	
13:00 ~ 13:50	50분	· 총조사 지도요령	
14:00 ~ 15:50	110분	· 산업 및 직업	
16:00 ~ 17:50	110분	· 조사표 코딩, 내검요령	
<셋째날>			
08:40 ~ 09:00	20분	· 참석자등록	
09:00 ~ 09:50	50분	· 인구조사과장 당부말씀	
10:00 ~ 10:50	50분	· 총조사 교육요령	
11:00 ~ 11:50	50분	· 총조사 행정처리사항	

□ 시군구 교관단 교육

시 간	소요분	교육내용	비 고
<첫째날>			
08:40 ~ 09:00	20분	· 참석자등록 및 서류배포	
09:00 ~ 09:50	50분	· 개식, 국민의례, 인사말	· 시도 책임관
10:00 ~ 10:50	50분	· 총조사 실시계획	인사말 및 배석
11:00 ~ 11:40	40분	· 조사표(표본)작성(실습)	
(12:00 ~ 13:00)	(60분)	(중식)	
13:00 ~ 13:50	50분	· 조사개요, 조사방법	· VTR 15분 포함
14:00 ~ 14:50	50분	· 조사대상, 준비조사	· VTR 15분 포함
15:00 ~ 16:50	110분	· 인구에 관한 사항(표본)	· VTR 30분 포함
<둘째날>			
08:40 ~ 09:00	20분	· 참석자 등록	· 시도 책임관
09:00 ~ 10:50	110분	· 가구, 주택 사항(표본)	배석
11:00 ~ 11:50	50분	· 총조사 지도요령, 교육요령	
(12:00 ~ 13:00)	(60분)	(중식)	
13:00 ~ 13:50	50분	· 산업 및 직업	
14:00 ~ 15:50	110분	· 조사표 코딩 및 내검요령	· VTR 30분 포함
16:00 ~ 16:50	50분	· 총조사 행정처리사항	

□ 읍면동, 지도원 및 업무보조원 교육

시 간	소요분	교육내용	비 교
<첫째날>			
08:40 ~ 09:00	20분	· 참석자등록 및 서류배포	
09:00 ~ 09:50	50분	· 개식, 국민의례, 인사말	· 시장, 군수,
10:00 ~ 10:50	50분	· 총조사 실시계획	구청장 인사말
11:00 ~ 11:40	40분	· 조사표(표본)작성(실습)	
(12:00 ~ 13:00)	(60분)	(중식)	
13:00 ~ 13:50	50분	· 조사개요, 조사방법	· VTR 15분 포함
14:00 ~ 14:50	50분	· 조사대상, 준비조사	· VTR 15분 포함
15:00 ~ 16:50	110분	· 인구에 관한 사항(표본)	· VTR 30분 포함
<둘째날>			
08:40 ~ 09:00	20분	· 참석자 등록	· 부시장, 부군수
09:00 ~ 10:50	110분	· 가구, 주택 사항(표본)	부구청장 배석
11:00 ~ 11:50	50분	· 총조사 지도요령, 교육요령	
(12:00 ~ 13:00)	(60분)	(중식)	
13:00 ~ 13:50	50분	· 산업 및 직업	
14:00 ~ 15:50	110분	· 조사표 코딩 및 내검요령	· VTR 30분 포함
16:00 ~ 16:50	50분	· 총조사 행정처리사항	

□ 조사원(표본) 교육

시 간	소요분	교육내용	비 고
<첫째날>			
08:40 ~ 09:00	20분	· 참석자등록	
09:00 ~ 09:20	20분	· 국민의례, 임용장수여, 선서	· 읍면동장 인사말
09:20 ~ 10:00	40분	· 조사표작성(실습)	
10:00 ~ 10:50	50분	· 조사개요, 조사방법	· VTR 15분 포함
11:00 ~ 11:50	50분	· 조사대상, 준비조사	· VTR 15 포함
(12:00 ~ 13:00)	(60분)	(중식)	
13:00 ~ 14:50	110분	· 인구에 관한 사항	· VTR 30분 포함
15:00 ~ 16:50	110분	· 가구, 주택 사항	· VTR 30분 포함
17:00 ~ 17:30	30분	· 사례발표	· 95년 총조사
<둘째날>			
08:40 ~ 09:00	20분	· 참석자등록	
09:00 ~ 09:50	50분	· 산업 및 직업	
10:00 ~ 11:50	110분	· 코딩, 내검, 조사표정리	· VTR 30분 포함

□ 조사원(전수) 교육

시 간	소요분	교육내용	비 고
08:40 ~ 09:00	20분	· 참석자등록	
09:00 ~ 09:20	20분	· 국민의례, 임용장수여, 선서	· 읍면동장 인사말
09:20 ~ 09:50	30분	· 조사표작성(실습)	
10:00 ~ 10:50	50분	· 조사개요, 조사방법	· VTR 15분
11:00 ~ 11:50	50분	· 조사대상, 준비조사	· VTR 15분
(12:00 ~ 13:00)	(60분)	(중식)	
13:00 ~ 14:20	80분	· 인구에 관한 사항	· VTR 20분
14:30 ~ 15:50	80분	· 가구, 주택 사항	· VTR 20분
16:00 ~ 17:20	80분	· 코딩, 내검, 조사표정리	· VTR 20분
17:30 ~ 18:00	30분	· 사례발표	· 95년 총조사

[붙임6]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1999				2000												2001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2/4	3/4	4/4
1. 시범예행조사																					
○ 전문가 및 이용자회의	99. 9월																				
○ 통계위원회(인구분과) 회의	99. 9월																				
○ 조사실시	99. 11. 1~ 11.9																				
○ 조사결과 집계·분석	99. 12. 1~ 2000. 1.31																				
2. 조사구 설정																					
○ 군부조사구 설정	99. 9 ~ 12월																				
○ 시부조사구 설정 - 도의 일반시 - 특별·광역시	2000. 2 ~ 3월 2000. 4 ~ 5월																				
3. 종합시행 계획수립 및 시달																					
○ 종합계획 작성	2000. 4 ~ 5월																				
○ 관계관 회의 계획 및 시달	2000. 6월																				
4. 각종표류 및 용품등 제작																					
○ 조사표, 용품(안) 작성	2000. 2 ~ 5월																				
○ 인쇄 및 제작 발주	2000. 6 ~ 7월																				
○ 표류 및 용품 배부	2000. 8월																				
5. 홍 보																					
○ 홍보준비 및 여건조성	2000. 2 ~ 3월																				
○ 참여분위기 조성	2000. 4 ~ 9월																				
○ 집중홍보	2000. 10 ~ 11월																				
6. 실시기관 관계관 회의																					
○ 시도 통계담당과장 회의	2000. 6월																				
○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2000. 8월																				
○ 특별조사구 관계관회의	2000. 7월~11월																				
7. 인력동원 및 교육																					
○ 기본계획 및 교재 작성	2000. 1 ~ 6월																				
○ 지도 공무원 지정	2000. 8. 31한																				
○ 조사원 채용	2000. 9 월																				
○ 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																					
- 공무원	2000. 9 월																				
- 조사요원	2000. 10월																				
8. 실지조사 및 내검																					
○ 준비 및 본조사	2000. 10. 30~11. 10																				
○ 내용검사	2000. 11. 13~11. 30																				
○ 조사표류 제출	2000. 12. 1~12.7																				
9. 사후조사																					
○ 준비 및 본조사	2000. 12. 1~12. 10																				
○ 결과처리 및 분석	2000. 12~ 2001.6월																				
10. 종합평가																					
○ 평가 계획수립	2000. 7~ 2000. 8월																				
○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	2001. 4월																				
11.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 잠정집계 보고	2000. 12. 31일 이내																				
○ 자료입력	2000 . 12~ 2001. 3월																				
○ 기계내검	2000. 12 ~ 2001. 8월																				
○ 전수 집계결과	2001. 9월																				
○ 10% 표본 집계결과	2001. 12월																				
12. 집계 결과 분석																					
○ 분야별 종합분석	2000. 10 ~ 2002.9월																				

23-2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용품 배부 계획

2000. 8

통 계 청

목 차

Ⅰ. 목 적 ····· 3

Ⅱ. 추진방향 ····· 3

Ⅲ. 배부대상 용품 및 운송체계 ····· 3

Ⅳ. 조사용품의 배부 및 보관시 유의사항 ····· 5

Ⅴ. 행정사항 ····· 6

Ⅵ. 조사용품 배부기준 ····· 9

Ⅶ. 시도별 조사용품 배부내역 ····· 17

<부록>

1. 행정구역, 조사구수 및 조사요원수
2. 내검요원 및 지도공무원수
3. 특성별 조사구수

Ⅰ. 목 적

○ 본 계획은 2000 인구주택총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약 70여종의 각종 조사용품을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도, 구시군, 읍면동)에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함

Ⅱ. 추진방향

○ 9월 중순이후는 총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개최 등으로 인력동원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이전에 배부 완료

○ 또한, 배부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최소 인력운용으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및 실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강구 및 시행

Ⅲ. 배부대상 용품 및 운송체계

가. 배부 대상

○ 지방분산 제작분(전수조사표 등 4종), 홍보물품 및 일반입찰로 구매하는 용품(3종)을 제외한 모든 조사용품은 인천지방조달청 수원출장소 창고에 보관
※ 창고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1번지(별첨약도 참조)

○ 조사용품의 종류 및 물량 : 58여종 453톤

나. 배부 체계

○ 통계청에서 시·군·구로 직접 배송(시·군·구별 수량 시·도에서 산출)

○ 시·군·구에서는 시·도와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여 읍면동직원 소집(배부) 시기를 결정
- 경기도 수원 창고에서 하루에 약 20여개의 시·군·구로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므로 출발시간 및 거리에 따라 도착시간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시·군·구에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읍·면·동 직원을 소집

○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배부하는 작업은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여(예 실내체육관 등) 배부토록 할 것

- 읍면동 배부시 자체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

다. 배부 일정

○ 시·도별 배부순서 및 일정은 거리와 물량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배부기간은 납기 및 교육일정을 감안 8. 21~9. 5(기간중 14일간)기간 중 실시

배부일정	배 부 처		비 고
	1층 창고	**2층** 창고	
8. 21(월)	-	특별조사구(1)	- 택배 발송 또는 직접 수령
8. 22(화)	부산광역시 (35)		- 거리와 물량을 감안하여 배부일정을 편성함 - 출발일정 기준이므로 **도착일정은**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시군 직원도 사전에 참관 가능
8. 23(수)	전라북도 (19)	강 원 도 (15)	
8. 24(목)	경상남도 (30)		
8. 25(금)	광주광역시 (13)	전라남도 (21)	
8. 26(토)	제 주 도 (5)		
8. 28(월)	충청남도 (19)	대전광역시(13)	
8. 29(화)	울산광역시 (10)	경상북도 (28)	
8. 30(수)	대구광역시 (24)	충청북도 (14)	
8. 31(목)		인천광역시(23)	
9. 1(금)-2(토)		경 기 도 (83)	
9. 4(월)-5(화)	서울특별시(101)		

주) 1. ( )안의 숫자는 예상 물량임(톤)

라. 용품 배부반 편성운영

○ 인구조사과 직원을 현지에 고정 배치하여 납품 시부터 배부 완료 시까지 조사용품 관리 및 배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출발일시 및 도착시간 등 조사용품 배부에 관한 추진 및 의문사항은 배부반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 할 것

배부반 연락처

☎ 통계청 : 042-481-2234~35
조달청 수원창고 : 031-202-7101 또는 011-267-7250(장기천)

Ⅳ. 조사용품의 배부 및 보관시 유의사항

○ 조사용품의 예비량은 예산절감 및 물자낭비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물량만 제작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충분한 예비량을 보관관리**하여 용품 과부족시 원활히 조절할 수 있도록 조치
- 중앙 예비량은 업무 참고용으로 최소한만 확보하였으므로 중앙에 추가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조사표 및 지침서 등은 가구수의 변동 및 조사원 교체를 감안하여 적정한 예비량 확보(시·군·구에서 확보) 필요

○ 조사용품의 인수 후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여 보관(화재, 도난 및 침수예방 등)
-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서류창고 등

※ 읍면동 기능전환 등으로 조사표 보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읍면동은 본조사시까지 시·군·구에서 보관, 관리 및 배부

○ 조사표 보관시 가급적 저지대는 피하고 방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
- 9월~10월중에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폭우가 예상되므로 보관 관리에 철저
  · 종전에는 태풍으로 인해 면(面)전체의 조사표류가 침수된 사례도 있었음
- 조사표 적재시 아래에 깔목을 놓은 후 그 위에 적재하여 물에 젖지 않도록 유의

○ 조사시 현저한 가구변동으로 조사표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읍면동의 보유량에서 1차 조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시·군·구, 시·도의 예비량으로 조절하여 사용

○ 조사요원에게 조사용품 지급시 조사대상가구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지급
- 조사표는 매일 조사대상가구를 확인하여 지급토록 하고, 조사표 1매라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도록 배부량에 각별히 유의

- 조사지침서류 및 사무용품은 조사원 교육시에, 가구명부는 준비조사시에, 조사표는 본 조사시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지급

○ 조사원 교체 시에는 전임조사원의 조사용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조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
- 불가피한 사유로 반납 또는 인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량으로 지급

○ 포장상자는 조사표류 제출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
- 조사표류 제출시 기 배부한 「회수용 상자」 이외에 추가로 상자가 더 필요하므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배부용 상자」를 적정량 확보

Ⅴ. 행정사항

○ **시·군·구별 수량 및 도착지 통보(시도→통계청, 8월 16일한)**
※ FAX로 전송 요망(042-481-2470, 행정 113-2470)
○ 시도에서는 사전에 배부방법 및 체계에 대해서 구시군직원에게 교육실시
○ 조사표류 수령 후 다음 양식에 의해 수령증 즉시 제출
○ 수령증은 아래 양식에 의해 시·도 총괄분을 제출하고 시·군·구의 수령증은 시도에서 보관
○ 지방분산 인쇄물(전수조사표 등 4종), 홍보물 및 일반입찰분(3종)은 인수후 별도의 수령증 또는 인수증 작성 제출

인수장소 통보양식

2000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용품 인수장소

시도 및 시군구명	담당자	인수장소 주소	전화번호	비 고

수령증 양식

2000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용품

수 령 증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1. 조사지침서(전수)	부		

주) 지방분산 조사용품은 제외

상기 물품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00. . .

○○ 시·도 ○○관(과)

통계담당계장 (인)(서명)

< 붙 임 >

2000인구주택총조사

시·도별 조사표류 적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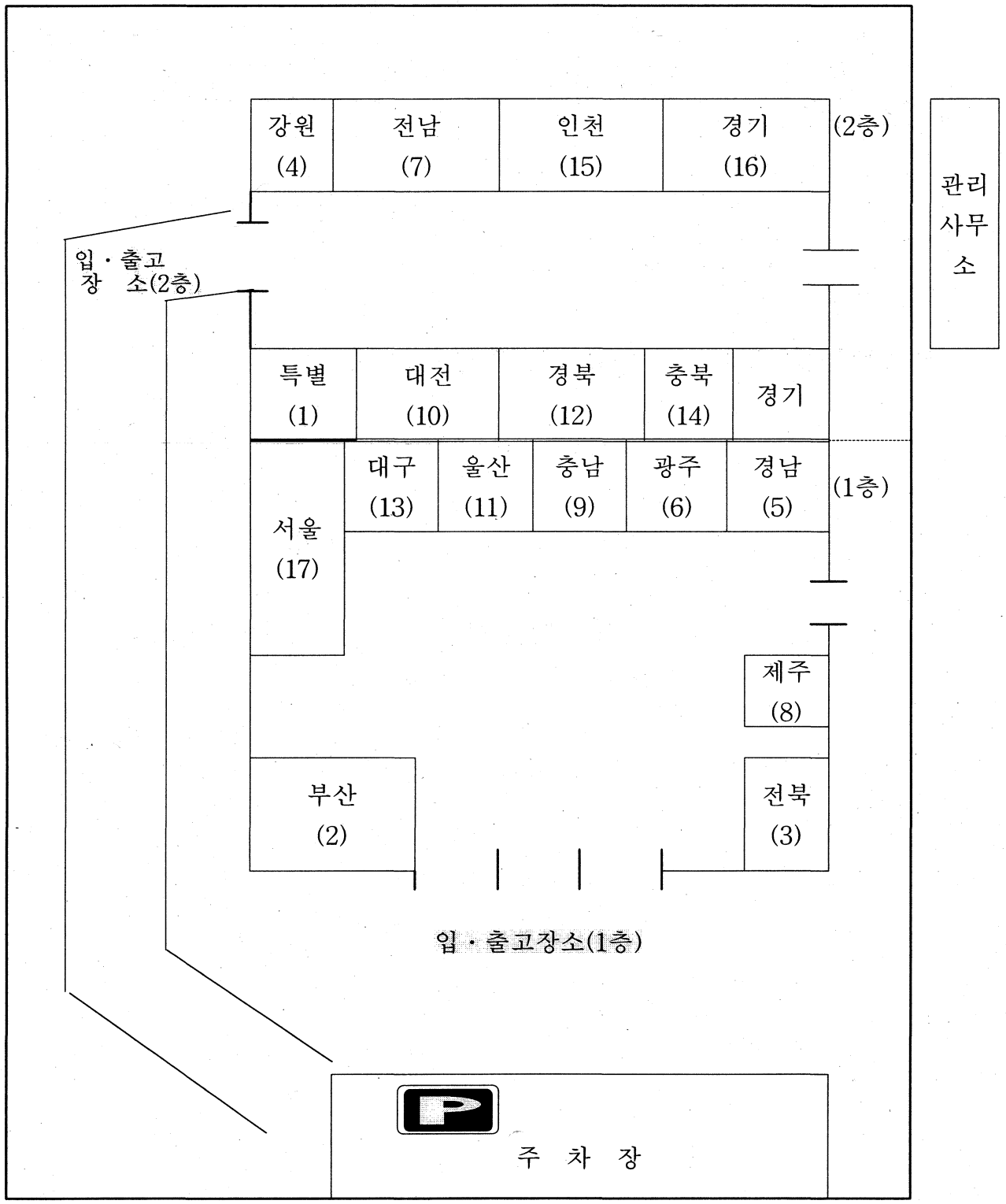

주) ( )안의 숫자는 배출순서임

Ⅵ. 조사용품 배부기준

일련번호	품 명	배부기준		비 고
1	조사표(전수)	· 5인이하 가구당 · 6인이상 가구당 · 예비량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중앙보유	1매 2매 25% 1%, 5% 19% 62,653매	· 예비량속에 교육용 포함 ·60부 단위 띠 묶음 **· 지방 분산인쇄 직송**
2	조사표(표본)	· 5인이하 가구당 · 6인이상 가구당 · 3, 4번 조사구 수용인원÷5 · 예비량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중앙보유	1매 2매 20% 1% 5% 14% 16,512매	상 동
3	가구홍보용전단	· 가 구 당 · 예 비 량 - 시·군·구 · 중앙보유	1매 3% 3% 355	상 동
4	조사표기입요령 (전 수)	· APT전수가구 · APT이외의 전수가구 (면접불능가구율) · 예비량 - 시·군·구 · 중앙보유	1부 25% 3% 3% 397	상 동
5	조사표기입요령 (표 본)	· 표본가구수의 · 예비량 - 시·군·구 · 중앙보유	25% 3% 3% 318	· 표본가구수의 25%중에서 예비량 3%별도 확보
6	외국인조사표	· 외국인 가구당 · 호텔 객실당 · 예비량 - 시 도 - 시·군·구 · 특별조사구 · 중앙보유	1매 1매 35% 10% 25% 620 2,935	
7	빈집조사표	· 조사구당 · 예비량 10% - 시·군·구 · 중앙보유	1매 10% 10% 3,000	

일련번호	품 명	배부기준	비 고
8	조사지침서 (전 수)	· 전수조사원당 1부 · 예비량 5% - 시 · 도 1% - 시 · 군 · 구 4% · 중앙보유 300부	
9	조사지침서 (표 본)	· 표본조사원당 1부 · 예비조사원당 1부 · 지도참여 공무원 1부 (시 · 도7부, 시 · 군 · 구 2부, 읍면동 2부) · 예비량 5% - 시 도 1% - 시 · 군 · 구 4% · 중앙보유(내검용) 2,000부	
10	지도지침서	· 지도원 1부 · 지도공무원 1부 (시 · 도7, 시 · 군 · 구(읍면동별) 1부, 읍면동당 3부) · 예비량 없음 · 중앙보유 2,000부	
11	각종부호분류지침	· 조사원 및 지도원당 1부 · 지도공무원 - 시 도 : 시군구별 1부 - 시군구 : 읍면동별 1부 - 읍 면 동 3부 · 중앙보유(내검용) 2,000부	
12	산업 · 직업부호 기입 요령	· 표본조사원당 1부 · 지도원당 1부 · 지도공무원 - 시 도 : 시군구별 1부 - 시군구 : 읍면동별 1부 - 읍 면 동 3부 · 예비량 없음 · 보관용(교관 · 내검용) 2,000부	
13	내용검토지침서	· 내검요원 및 내검지도원당 1부 · 내검참여 지도공무원 ·· 시 도 5부 ·· 시군구 3부 ·· 읍면동 2부 · 중앙심사용 및 보관용 2,000부	

일련번호	품 명	배부기준		비 고
14	가구명부용지	· 조사구당 · 예비량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중앙보유	3매 30% 1% 5% 24% 727매	
15	공동주택기본 정보수집조사표	· 조사구특성번호 A, 1, 2조사구 · 예비량 · 중앙보유	1매 10% 289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등)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 · 조사표 제출시 함께 제출
16	일반조사표간지 (외국인, 빈집)	· 읍면동당 · 예비량 - 시·군·구 · 중앙보유	2매 20% 20% 288매	· 외국인과 빈집 따로 편철
17	가구명부간지	· 읍면동당 · 예비량 - 시·군·구 · 중앙보유	3매 20% 20% 382매	· 읍면동별로 편철
18	공동주택기본 정보 수집표 간지	· 읍면동당 · 예비량 - 시·군·구 · 중앙보유	1매 20% 20% 494매	· 읍면동별로 편철
19	조사원연락전	· 전체가구의 · 예비량 - 시·군·구 · 중앙보유	20% 5% 5% 293매	· 확보량중에서 별도로 예비량 5%확보
20	비밀보호용봉투	· 아파트전수가구 · 아파트이외 전수가구 · 예비량 - 시·군·구 · 중앙보유	1매 35% 5% 5% 155매	· 35%중에서 예비량 5%확보
21	조사구요도 간지	· 읍면동 · 예비량 - 시·군·구 · 중앙보유	2매 20% 20% 288매	· 읍면동별로 편철
22	일반조사표 표지 (전 수)	· 전수조사구당 · 예비량 · 중앙보유 및 심사용	1매 15% 2,178매	· 조사구별로 편철
23	일반조사표 표지 (표 본)	· 표본조사구당 · 예비량 · 중앙보유 및 심사용	1매 20% 502	· 조사구별로 편철

일련번호	품 명	배부기준		비 고
24	일반조사표 표지 (외국인 및 빈집)	· 300조사구당 · 예비량 · 중앙보유	2매 20% 150	
25	가구명부 표지	· 300조사구당 · 예비량 · 중앙보유	3매 20% 150	
26	공동주택기본정보 수집표 표지	· 300조사구당 · 예비량 · 중앙보유	1매 20% 150	· 시 · 군 · 구별로 편철
27	조사구요도표지	· 300조사구당 · 예비량 · 중앙보유	2매 20% 150	· 시 · 군 · 구별로 편철 · 1부는 시 · 군 · 구에서 보관 1부 제출
28	가구일련번호표 (스티커)	· 가구당 · 예비량 · 중앙보유	1매 5% 7,615매	· 1장에 63매 인쇄 · 5색으로 구분 인쇄(조사구별로 구분 부착)
29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전수)	· 전수조사구 25조사구당 · 예비량 - 시 · 군 · 구 · 중앙보유	1개 10% 10% 118개	· 조사표 제출시 사용
30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표본)	· 표본조사구 8개당 · 예비량 - 시 · 군 · 구 · 중앙보유	1개 10% 10% 2개	· 조사표 제출시 사용
31	문구케이스 (연필, 지우개, 흑색볼펜, 적색볼펜, 연필깎기)	· 조사원 및 지도원당 · 예비량 - 시 · 도 - 시군구 - 읍면동 · 본청보유	1개 5% 1% 1% 3% 436개	· 세트로 되어 있으므로 배부에 철저를 요함 · 본조사시 사용
32	연 필	· 이기내검요원 · 지도원당 · 예비량 - 시 · 도 - 시군구 - 읍면동	1개 5% 1% 1% 3%	· 내검용
33	지우개	· 이기내검요원 · 지도원당 · 예비량 - 시 · 도 - 시군구 - 읍면동	1개 5% 1% 1% 3%	· 내검용

일련번호	품 명	배부기준	비 고
34	볼펜(흑색)	· 이기내검요원 · 지도원당 1개 · 예비량 5% - 시 · 도 1% - 시군구 1% - 읍면동 3% · 특별조사 6,900개 (외교부 300, 경찰청 1,750, 해양경찰청 70 법무부 280, 국방부 4,500)	· 내검용
35	볼펜(적색)	· 이기내검요원 · 지도원당 1개 · 예비량 5% - 시 · 도 1% - 시군구 1% - 읍면동 3% · 특별조사 6,900개 (외교부 300, 경찰청 1,750, 해양경찰청 70, 법무부 280, 국방부 4,500)	· 내검용
36	조사요원 등록명부	· 채용예정인원(조사원, 지도원, 예비조사원) 7명당 1매 · 예비량 30% - 시 · 군 · 구 5% - 읍면동 25% · 중앙보유 455매	· 조사요원 등록시 사용 · 부족시 복사분 사용 가능
37	임 명 장 (조사원용)	· 조사원당 1매 · 예비량 10% - 시 · 군 · 구 10% · 중앙보유 348매	
38	임 명 장 (지도원용)	· 지도원당 1매 · 예비량 10% - 시 · 군 · 구 10% · 중앙보유 361매	
39	조사요원서약서	· 조사원, 지도원당 1매 · 예비량 10% - 시 · 군 · 구 10% · 중앙보유 309매	
40	조사요원출근부	· 조사원, 지도원, 내검요원당 1매 · 예비량 10% - 시 · 군 · 구 10% · 중앙보유 239매	· 교육시부터 서명 날인 · 부족시 복사분 사용가능

일련번호	품 명	배부기준		비 고
41	조사요원증	· 조사원, 지도원(**4명당**) · 예비량 - 시 · 군 · 구 · 중앙보유	1매 20% 20% 355매	· 시 · 군 · 구별로 작업 · 시 · 군 · 구수의 직인 날인후 코팅 · 조사 후 반납
42	조사요원 코팅지	· 조사원, 지도원 · 예비량 - 시 · 군 · 구 · 중앙보유	1매 20% 20% 355개	
43	조사요원증 목걸이 끈	· 조사원, 지도원 · 예비량 - 시 · 군 · 구 · 중앙보유	1매 20% 20% 355개	
44	조사요원 안전수칙	· 조사원 · 지도원 · 예비량 · 지도공무원 · 중앙보유분 (중앙지도공무원)	1부 1부 5% 1부 501부	
45	조사지도수첩	· 지도원당 · 지도공무원당 ·· 시 도 : 시군구별 ·· 시군구 : 읍면동별 ·· 읍면동 : 읍면동별 · 중앙 실사지도 참여 및 보관용	1부 1부 1부 1부 3부 2,000부	
46	조 사 표 보호용케이스 (가 방)	· 조사원 · 지도원 · 예비량 - 시 · 군 · 구 · 중앙보유	1개 1개 3% 3% 276개	
47	조사요원 휘장 (마크)	· 조사원 · 지도원 · 예비량 - 시 · 군 · 구 · 중앙보유	1개 1개 3% 3% 276개	
48	조사표 받침대	· 조사원 · 예비량 - 시 · 군 · 구 · 중앙보유	1개 3% 3% 61개	

일련번호	품 명	배부기준		비 고
49	조사참여 답례품	· 조사원 , 지도원당	1개	
		· 조사참여지도공무원당	1개	
		- 시 · 도 (시 · 군 · 구당)	1개	
		- 시 · 군 · 구 (읍면동당)	1개	
		- 읍면동	3개	
		· 중앙보유	2,500개	
50	특별조사구조사표 (군인전경)	· 법무부	1,200	
		· 국방부	172,000	
		· 경찰청	12,500	
		· 해양경찰청	900	
		· 중앙보유	1,400	
51	특별조사구조사표 (교도소)	경찰청	2,200	
		· 법무부	16,800	
		· 해양경찰청	200	
		· 중앙보유	500	
52	특별조사구조사표 (재외공관)	· 재외공관	1,800	
		· 중앙보유	500	
53	특별조사구 지 침 서	· 재와공관	260	
		· 경찰청	1,280	
		· 해양경찰청	80	
		· 법무부	1,100	
		· 국방부	15,000	
		· 중앙보유	200	
54	특별조사구 조사표 표지	· 재외공관	130	
		· 경찰청	583	
		· 해양경찰청	20	
		· 국방부	2,267	
		· 법무부	150	
		· 중앙보유	50	
55	특별조사구 회수용상자	· 재외공관	3	
		· 경 찰 청	35	
		· 해양경찰청	3	
		· 국 방 부	265	
		· 법 무 부	40	
		· 중앙보유	4	

일련번호	품 명	배부기준		비 고
56	특별조사구 접수 대장	· 재외공관 · 경 찰 청 · 해양경찰청 · 국 방 부 · 법 무 부 · 중앙보유	300 1,500 70 5,750 280 100	
57	전공 분야 참고 자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당 · 중앙보유	2부 2부 2부 448부	
58	주요 성씨의 본관분류부호	· 조사원 및 지도원당 · 지도공무원당 · 중앙보유(내검용)	1부 1부 2,450부	

Ⅶ. 시·도별 조사용품 배부내역

품 목	1. 전수조사표			2. 표본조사표			3. 가구홍보용전단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17,720,000	11,813	500	1,900,000	3,166	400	15,251,600	10,167	1,100
시군구	17,657,350	11,771	850	1,883,487	3,139	87	15,251,242	10,167	742
서 울	3,930,058	2,620	58	419,206	698	406	3,394,515	2,263	15
부 산	1,381,447	920	1,447	147,354	245	354	1,193,199	795	699
대 구	939,223	626	223	100,184	166	584	811,236	540	1,236
인 천	913,268	608	1,268	97,415	162	215	788,818	525	1,318
광 주	499,939	333	439	53,327	88	527	431,813	287	1,313
대 전	507,024	338	24	54,083	90	83	437,932	291	1,432
울 산	377,800	251	1,300	40,299	67	99	326,317	217	817
경 기	3231,173	2,154	173	344,658	574	258	2,790,866	1,860	866
강 원	598,838	399	338	63,876	106	276	517,235	344	1,235
충 북	557,817	371	1,317	59,500	99	100	481,804	321	304
충 남	732,629	488	629	78,147	130	147	632,795	421	1,295
전 북	747,348	498	348	79,717	132	517	645,508	430	508
전 남	820,482	546	1,482	87,518	145	518	708,676	472	676
경 북	1,079,370	719	870	115,133	191	533	932,286	621	786
경 남	1,155,417	770	417	123,244	205	244	997,970	665	470
제 주	185,517	123	1,017	19,826	33	26	160,272	106	1,272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62,653	41	1,153	16,512	27	312	355	0	355
포장단위	1,500			600			1,500		

품 번	4. 조사표기입요령(전수)			5. 조사표기입요령(표본)			6. 외국인조사표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6,988,200	4,658	1,200	370,501	185	501	174,000	870	-
시도계	6,987,804	4,658	804	370,183	85	183	170,445	844	1645
서 울	1,555,347	1,036	1,347	82,396	41	396	45,743	228	143
부 산	546,717	364	717	28,961	14	961	12,903	64	103
대 구	371,704	247	1,204	19,695	9	1,695	9,792	48	192
인 천	361,432	240	1,432	19,146	9	1,146	9,524	47	124
광 주	197,854	131	1,354	10,481	5	481	3,424	17	24
대 전	200,658	133	1,158	10,629	5	629	4,849	24	49
울 산	149,517	99	1,017	7,920	3	1,920	3,455	17	55
경 기	1,278,759	852	759	67,739	33	1,739	33,827	169	27
강 원	236,994	157	1,494	12,556	6	556	4,529	22	129
충 북	220,760	147	260	11,694	5	1,694	4,329	21	129
충 남	289,943	193	443	15,359	7	1,359	6,304	31	104
전 북	295,768	197	268	15,667	7	1,667	5,652	28	52
전 남	324,483	216	483	17,200	8	1,200	5,731	28	131
경 북	427,168	284	1,168	22,628	11	628	9,228	46	28
경 남	457,264	304	1,264	24,222	12	222	9,387	46	187
제 주	73,436	48	1,436	3,890	1	1,890	1,768	8	168
특별계							620	3	20
외 교									
경 찰							270	1	70
해 경							30		30
법 무							320	1	120
국 방									
중앙보유	397	-	397	318	-	318	2,935	14	135
포장단위	1,500			2,000			200		

품 번	7. 빈집조사표			8. 조사지침서(전수)			9. 조사지침서(표본)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273,700**	**109**	**1,200**	**105,370**	**1,053**	**70**	**44,337**	**443**	**37**
시도계	270,716	108	716	105,070	1,050	70	42,337	423	37
서 울	60,312	24	312	23,748	237	48	8,381	83	81
부 산	21,252	8	1,252	8,205	82	5	3,074	30	74
대 구	14,433	5	1,933	5,526	55	26	2,109	21	9
인 천	14,001	5	1,501	5,224	52	24	1,959	19	59
광 주	7,685	3	185	2,795	27	95	1,157	11	57
대 전	7,799	3	299	2,912	29	12	1,215	12	15
울 산	5,798	2	798	2,160	21	60	854	8	54
경 기	49,480	19	1,980	18,659	186	59	7,340	73	40
강 원	9,223	3	1,723	3,665	36	65	1,666	16	66
충 북	8,552	3	1,052	3,327	33	27	1,555	15	55
충 남	11,169	4	1,169	4,489	44	89	2,055	20	55
전 북	11,413	4	1,413	4,494	44	94	2,050	20	50
전 남	12,515	5	15	5,079	50	79	2,336	23	36
경 북	16,531	6	1,531	6,628	66	28	3,150	31	50
경 남	17,694	7	194	6,951	69	51	2,960	29	60
제 주	2,843	1	343	1,208	12	8	476	4	76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3,000	1	500	300	3	0	2,000	20	0
포장단위	2,500			100			100		

품 번	10. 지도지침서			11. 각종분류부호집			12. 산업직업분류기입요령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28,350	567	0	156,263	1,562	63	56,196	561	96
시도계	26,350	527	0	153,813	1,538	13	53,746	537	46
서 울	4,840	96	40	33,096	330	96	10,485	104	85
부 산	1,845	36	45	11,693	116	93	3,878	38	78
대 구	1,208	24	8	7,885	78	85	2,622	26	22
인 천	1,155	23	5	7,427	74	27	2,451	24	51
광 주	674	13	24	4,100	41	0	1,438	14	38
대 전	663	13	13	4,262	42	62	1,488	14	88
울 산	491	9	41	3,111	31	11	1,053	10	53
경 기	4,121	82	21	26,864	268	64	9,094	90	94
강 원	1,175	23	25	5,662	56	62	2,171	21	71
충 북	1,015	20	15	5,162	51	62	1,993	19	93
충 남	1,357	27	7	6,914	69	14	2,638	26	38
전 북	1,520	30	20	7,010	70	10	2,730	27	30
전 남	1,770	35	20	7,957	79	57	3,119	31	19
경 북	2,134	42	34	10,411	104	11	4,098	40	98
경 남	2,067	41	17	10,504	105	4	3,884	38	84
제 주	315	6	15	1,755	17	55	604	6	4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2,000	40	0	2,450	24	50	2,450	24	50
포장단위	50			100			100		

품 번	13. 내용검토지침서			14. 가구명부용지			15. 공동주택기본정보 수 집 표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50,375	503	75	976,000	488	0	271,000	135	1,000
시도계	48,375	483	75	975,273	487	1,273	270,716	135	716
서 울	10,244	102	44	215,527	107	1,527	60,328	30	328
부 산	3,696	36	96	76,248	38	248	21,252	10	1,252
대 구	2,488	24	88	51,881	25	1,881	14,433	7	433
인 천	2,405	24	5	49,908	24	1,908	14,001	7	1
광 주	1,354	13	54	27,666	13	1,666	7,685	3	1,685
대 전	1,361	13	61	28,294	14	294	7,799	3	1,799
울 산	1,014	10	14	20,818	10	818	5,798	2	1,798
경 기	8,584	85	84	177,870	88	1,870	49,480	24	1,480
강 원	1,796	17	96	33,532	16	1,532	9,223	4	1,223
충 북	1,634	16	34	31,238	15	1,238	8,552	4	552
충 남	2,110	21	10	40,801	20	801	11,169	5	1,169
전 북	2,141	21	41	41,300	20	1,300	11,413	5	1,413
전 남	2,478	24	78	45,267	22	1,267	12,515	6	515
경 북	3,223	32	23	60,691	30	691	16,531	8	531
경 남	3,318	33	18	63,866	31	1,866	17,694	8	1,694
제 주	529	5	29	10,366	5	366	2,843	1	843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2,000	20	0	727	0	727	284	0	284
포장단위	100			2,000			2,000		

품 번	16. 일반조사표간지 (외국인및빈집)			17. 가구명부간지 (읍면동용)			18. 공동주택기본정보 수집표간지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8,700	17	200	13,000	26	0	4,700	9	200
시도계	8,412	16	412	12,618	25	118	4,206	8	206
서 울	1,260	2	260	1,889	3	389	635	1	135
부 산	530	1	30	795	1	295	265	0	265
대 구	331	0	331	496	0	496	165	0	165
인 천	326	0	326	489	0	489	163	0	163
광 주	203	0	203	305	0	305	101	0	101
대 전	182	0	182	273	0	273	91	0	91
울 산	139	0	139	208	0	208	69	0	69
경 기	1,153	2	153	1,731	3	231	576	1	76
강 원	451	0	451	676	1	176	225	0	225
충 북	367	0	367	550	1	50	183	0	183
충 남	496	0	496	745	1	245	248	0	248
전 북	595	1	95	892	1	392	297	0	297
전 남	715	1	215	1,072	2	72	357	0	357
경 북	808	1	308	1,213	2	213	404	0	404
경 남	753	1	253	1,130	2	130	376	0	376
제 주	103	0	103	154	0	154	51	0	51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288	0	288	382	0	382	494	0	494
포장단위	500			500			500		

품 번	19. 조사원연락전			20. 비밀보호용봉투			21. 조사구요도간지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2,961,700	1,480	1,700	7,656,700	7,656	700	8,700	17	200
시도계	2,961,407	1,480	1,407	7,656,545	7,656	545	8,412	16	412
서 울	659,139	329	1,139	1,607,805	1,607	805	1,260	2	260
부 산	231,689	115	1,689	609,944	609	944	530	1	30
대 구	157,521	78	1,521	422,045	422	45	331	0	331
인 천	153,168	76	1,168	435,765	435	765	326	0	326
광 주	83,847	41	1,847	257,051	257	51	203	0	203
대 전	85,035	42	1,035	245,549	245	549	182	0	182
울 산	63,362	31	1,362	182,843	182	843	139	0	139
경 기	541,914	270	1,914	1,502,868	1,502	868	1,153	2	153
강 원	100,433	50	433	251,898	251	898	451	0	451
충 북	93,554	46	1,554	243,587	243	587	367	0	367
충 남	122,872	61	872	287,769	287	769	496	0	496
전 북	125,341	62	1,341	319,526	319	526	595	1	95
전 남	137,606	68	1,606	309,080	309	80	715	1	215
경 북	181,026	90	1,026	429,834	429	834	808	1	308
경 남	193,780	96	1,780	490,101	490	101	753	1	253
제 주	31,120	15	1,120	60,880	60	880	103	0	103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293	0	293	155	0	155	288	0	288
포장단위	2,000			1,000			500		

품 번	22. 일반조사표표지 (전 수)			23. 일반조사표표지 (표 본)			24. 일반조사표표지 (외국인및빈집)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261,000	2,610	0	30,510	305	10	2,150	21	50
시도계	258,822	2,588	22	30,008	300	8	2,000	20	0
서 울	57,203	572	3	6,635	66	35	448	4	48
부 산	20,235	202	35	2,346	23	46	156	1	56
대 구	13,768	137	68	1,596	15	96	106	1	6
인 천	13,244	132	44	1,536	15	36	102	1	2
광 주	7,342	73	42	850	8	50	56	0	56
대 전	7,508	75	8	871	8	71	58	0	58
울 산	5,524	55	24	640	6	40	42	0	42
경 기	47,206	472	6	5,472	54	72	365	3	65
강 원	8,898	88	98	1,032	10	32	68	0	68
충 북	8,290	82	90	961	9	61	64	0	64
충 남	10,828	108	28	1,255	12	55	83	0	83
전 북	10,960	109	60	1,270	12	70	84	0	84
전 남	12,012	120	12	1,393	13	93	92	0	92
경 북	16,106	161	6	1,867	18	67	124	1	24
경 남	16,948	169	48	1,965	19	65	131	1	31
제 주	2,750	27	50	319	3	19	21	0	21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2,178	21	78	502	5	2	150	1	50
포장단위	100			100			100		

품 번	25. 가구명부 표지			26. 공동주택기본정보 수집표 표지			27. 조사구요도 표지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3,150	31	50	1,150	11	50	2,150	21	50
시도계	3,000	30	0	1,000	10	0	2,000	20	0
서 울	668	6	68	226	2	26	448	4	48
부 산	234	2	34	78	0	78	156	1	56
대 구	159	1	59	53	0	53	106	1	6
인 천	153	1	53	51	0	51	102	1	2
광 주	85	0	85	28	0	28	56	0	56
대 전	87	0	87	29	0	29	58	0	58
울 산	64	0	64	21	0	21	42	0	42
경 기	547	5	47	182	1	82	365	3	65
강 원	103	1	3	34	0	34	68	0	68
충 북	96	0	96	32	0	32	64	0	64
충 남	125	1	25	41	0	41	83	0	83
전 북	127	1	27	42	0	42	84	0	84
전 남	139	1	39	46	0	46	92	0	92
경 북	186	1	86	62	0	62	124	1	24
경 남	196	1	96	65	0	65	131	1	31
제 주	31	0	31	10	0	10	21	0	21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150	1	50	150	1	50	150	1	50
포장단위	100			100			100		

품 번	28. 가구일련번호표 (스티커)			29. 일반 조사표 회수용상자 (전수)			30. 일반 조사표 회수용상자 (표본)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15,555,000	493	25,500	10,020	501	-	3,440	172	-
시도계	15,547,385	493	17,885	9,902	495	2	3,438	171	18
서 울	3,460,434	109	26,934	2,193	109	13	766	38	6
부 산	1,216,368	38	19,368	774	38	14	268	13	8
대 구	826,988	26	7,988	526	26	6	182	9	2
인 천	804,135	25	16,635	506	25	6	176	8	16
광 주	440,197	13	30,697	280	14	0	97	4	17
대 전	446,435	14	5,435	287	14	7	99	4	19
울 산	332,653	10	17,653	211	10	11	73	3	13
경 기	2,845,058	90	10,058	1,807	90	7	628	31	8
강 원	527,278	16	23,278	340	17	0	118	5	18
충 북	491,159	15	18,659	317	15	17	110	5	10
충 남	645,082	20	15,082	414	20	14	143	7	3
전 북	658,042	20	28,042	419	20	19	145	7	5
전 남	722,436	22	29,436	459	22	19	159	7	19
경 북	950,388	30	5,388	616	30	16	213	10	13
경 남	1,017,348	32	9,348	648	32	8	225	11	5
제 주	163,384	5	5,884	105	5	5	36	1	16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7,615	0	7,615	118	5	18	2	0	2
포장단위	31,500			2,000			2,000		

품 번	31. 문구셑트			32. 연필			33. 지우개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146,950	489	250	42,550	42	550	42,550	42	550
시도계	146,514	488	114	42,546	42	546	42,546	42	546
서 울	32,539	108	139	9,575	9	575	9,575	9	575
부 산	11,332	37	232	3,361	3	361	3,361	3	361
대 구	7,691	25	191	2,292	2	292	2,292	2	292
인 천	7,216	24	16	2,203	2	203	2,203	2	203
광 주	3,942	13	42	1,222	1	222	1,222	1	222
대 전	4,150	13	250	1,249	1	249	1,249	1	249
울 산	3,017	10	17	922	0	922	922	0	922
경 기	26,141	87	41	7,860	7	860	7,860	7	860
강 원	5,136	17	36	1,429	1	429	1,429	1	429
충 북	4,762	15	262	1,345	1	345	1,345	1	345
충 남	6,373	21	73	1,725	1	725	1,725	1	725
전 북	6,302	21	2	1,671	1	671	1,671	1	671
전 남	7,080	23	180	1,901	1	901	1,901	1	901
경 북	9,489	31	189	2,593	2	593	2,593	2	593
경 남	9,687	32	87	2,750	2	750	2,750	2	750
제 주	1,657	5	157	448	0	448	448	0	448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436			4	-	4	440		
포장단위	300			1,000			1,000		

품 번	34. 흑색볼펜			35. 적색볼펜			36. 조사요원 등록 명부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49,450	49	450	49,450	49	450	27,500	27	500
시도계	42,546	42	546	42,546	42	546	27,045	27	45
서 울	9,575	9	575	9,575	9	575	6,013	6	13
부 산	3,361	3	361	3,361	3	361	2,091	2	91
대 구	2,292	2	292	2,292	2	292	1,421	1	421
인 천	2,203	2	203	2,203	2	203	1,332	1	332
광 주	1,222	1	222	1,222	1	222	728	0	728
대 전	1,249	1	249	1,249	1	249	767	0	767
울 산	922	0	922	922	0	922	557	0	557
경 기	7,860	7	860	7,860	7	860	4,829	4	829
강 원	1,429	1	429	1,429	1	429	948	0	948
충 북	1,345	1	345	1,345	1	345	878	0	878
충 남	1,725	1	725	1,725	1	725	1,176	1	176
전 북	1,671	1	671	1,671	1	671	1,161	1	161
전 남	1,901	1	901	1,901	1	901	1,305	1	305
경 북	2,593	2	593	2,593	2	593	1,748	1	748
경 남	2,750	2	750	2,750	2	750	1,785	1	785
제 주	448	0	448	448	0	448	306	0	306
특별계	6,900	6	900	6,900	6	900	0	0	0
외 교	300	0	300	300	0	300	0	0	0
경 찰	1,750	1	750	1,750	1	750	0	0	0
해 경	70	0	70	70	0	70	0	0	0
법 무	280		280	280		280	0	0	0
국 방	4,500	4	500	4,500	4	500	0	0	0
중앙보유	4	-	4	4	-	4	455	0	455
포장단위	1,000			1,000			1000		

품 번	37. 임명장(조사원용)			38. 임명장(지도원용)			39. 조사요원서약서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140,400	140	400	13,800	13	800	153,800	76	1,800
시도계	140,052	140	52	13,439	13	439	153,491	76	1,491
서 울	31,068	31	68	3,024	3	24	34,086	17	86
부 산	10,822	10	822	1,049	1	49	11,872	5	1,872
대 구	7,343	7	343	713	0	713	8,057	4	57
인 천	6,895	6	895	664	0	664	7,560	3	1,560
광 주	3,770	3	770	359	0	359	4,130	2	130
대 전	3,961	3	961	387	0	387	4,348	2	348
울 산	2,884	2	884	277	0	277	3,161	1	1,161
경 기	24,977	24	977	2,410	2	410	27,386	13	1,386
강 원	4,923	4	923	457	0	457	5,381	2	1,381
충 북	4,554	4	554	435	0	435	4,989	2	989
충 남	6,102	6	102	574	0	574	6,677	3	677
전 북	6,029	6	29	573	0	573	6,602	3	602
전 남	6,789	6	789	628	0	628	7,417	3	1,417
경 북	9,084	9	84	856	0	856	9,941	4	1,941
경 남	9,264	9	264	884	0	884	10,148	5	148
제 주	1,587	1	587	149	0	149	1,736	-	1,736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348	0	348	361	0	361	309	0	309
포장단위	1,000			1,000			2,000		

품 번	40. 조사용원출근부			41. 조사요원증			42. 조사요원 코팅지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205,000	102	1,000	41,950	83	450	167,800	83	1,800
시도계	204,761	102	761	41,890	83	390	167,445	83	1,445
서 울	45,618	22	1,618	9,300	18	300	37,184	18	1,184
부 산	15,908	7	1,908	3,240	6	240	12,951	6	951
대 구	10,818	5	818	2,200	4	200	8,790	4	790
인 천	10,201	5	201	2,060	4	60	8,247	4	247
광 주	5,593	2	1,593	1,130	2	130	4,506	2	506
대 전	5,852	2	1,852	1,190	2	190	4,743	2	743
울 산	4,269	2	269	860	1	360	3,448	1	1,448
경 기	36,831	18	831	7,470	14	470	29,876	14	1,876
강 원	7,112	3	1,112	1,470	2	470	5,870	2	1,870
충 북	6,613	3	613	1,360	2	360	5,443	2	1,443
충 남	8,778	4	778	1,820	3	320	7,284	3	1,284
전 북	8,632	4	632	1,800	3	300	7,202	3	1,202
전 남	9,727	4	1,727	2,030	4	30	8,091	4	91
경 북	13,071	6	1,071	2,710	5	210	10,845	5	845
경 남	13,457	6	1,457	2,770	5	270	11,071	5	1,071
제 주	2,281	1	281	480	0	480	1,894	0	1,894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239	0	239	60	0	60	355	0	355
포장단위	2,000			500매 (1매 당 4명 인쇄)			2,000		

품 번	43. 조사요원 목걸이 끈			44. 조사요원안전수칙			45. 지도수첩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167,800	83	1,800	161,740	404	140	28,493	142	93
시도계	167,445	83	1,445	160,789	401	389	26,493	132	93
서 울	37,184	18	1,184	34,652	86	252	4,858	24	58
부 산	12,951	6	951	12,232	30	232	1,854	9	54
대 구	8,790	4	790	8,251	20	251	1,209	6	9
인 천	8,247	4	247	7,770	19	170	1,158	5	158
광 주	4,506	2	506	4,287	10	287	672	3	72
대 전	4,743	2	743	4,459	11	59	661	3	61
울 산	3,448	1	1,448	3,254	8	54	489	2	89
경 기	29,876	14	1,876	28,109	70	109	4,158	20	158
강 원	5,870	2	1,870	5,906	14	306	1,186	5	186
충 북	5,443	2	1,443	5,388	13	188	1,022	5	22
충 남	7,284	3	1,284	7,217	18	17	1,366	6	166
전 북	7,202	3	1,202	7,310	18	110	1,529	7	129
전 남	8,091	4	91	8,294	20	294	1,785	8	185
경 북	10,845	5	845	10,862	27	62	2,152	10	152
경 남	11,071	5	1,071	10,965	27	165	2,082	10	82
제 주	1,894	0	1,894	1,833	4	233	312	1	112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355	0	355	951	2	151	2,000	10	0
포장단위	2,000			400			200		

품 번	46. 조사표보호용케이스			47. 조사요원휘장			48. 조사표받침대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144,000	1,440	0	144,000	144	0	131,200	1,312	0
시도계	143,724	1,437	24	143,724	143	724	131,139	1,311	39
서 울	31,918	319	18	31,918	31	918	29,090	290	90
부 산	11,116	111	16	11,116	11	116	10,134	101	34
대 구	7,544	75	44	7,544	7	544	6,876	68	76
인 천	7,079	70	79	7,079	7	79	6,457	64	57
광 주	3,867	38	67	3,867	3	867	3,530	35	30
대 전	4,071	40	71	4,071	4	71	3,709	37	9
울 산	2,960	29	60	2,960	2	960	2,700	27	0
경 기	25,643	256	43	25,643	25	643	23,387	233	87
강 원	5,038	50	38	5,038	5	38	4,610	46	10
충 북	4,672	46	72	4,672	4	672	4,264	42	64
충 남	6,252	62	52	6,252	6	252	5,714	57	14
전 북	6,182	61	82	6,182	6	182	5,645	56	45
전 남	6,945	69	45	6,945	6	945	6,357	63	57
경 북	9,309	93	9	9,309	9	309	8,506	85	6
경 남	9,502	95	2	9,502	9	502	8,674	86	74
제 주	1,626	16	26	1,626	1	626	1,486	14	86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276	2	76	276	0	276	61	0	61
포장단위	100			1,000			100		

품 번	49. 조사참여답례품			50. 특별조사구(군인전경)			51. 특별조사구(교도소)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156,313	312	313	188,000	75	500	19,700	13	200
시도계	153,813	307	313						
서 울	33,096	66	96						
부 산	11,693	23	193						
대 구	7,885	15	385						
인 천	7,427	14	427						
광 주	4,100	8	100						
대 전	4,262	8	262						
울 산	3,111	6	111						
경 기	26,864	53	364						
강 원	5,662	11	162						
충 북	5,162	10	162						
충 남	6,914	13	414						
전 북	7,010	14	10						
전 남	7,957	15	457						
경 북	10,411	20	411						
경 남	10,504	21	4						
제 주	1,755	3	255						
특별계	1,500	1	294	186,600	74	1,600	19,200	12	1,200
외 교	100	1	294						
경 찰	300	0	0	12,500	5	0	2,200	1	700
해 경	200	0	0	900		900	200	0	200
법 무	200	0	0	1,200		1,200	16,800	11	300
국 방	700	0	0	172,000	68	2,000			
중앙보유	1,000	3	206	1,400	0	1,400	500	0	500
포장단위	500			2,500			1,500		

품 번	52, 특별조사구(재외공관)			53. 특별조사구지침서			54. 특별조사구조사표표지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2,300	1	800	17,920	179	20	3,200	32	0
시도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특별계	1,800	1	300	17,720	177	20	3,150	31	50
외 교	1,800	1	300	260	2	60	130	1	30
경 찰				1,280	12	80	583	5	83
해 경				80	0	80	20	1	20
법 무				1,100	11	0	150	1	50
국 방				15,000	150	0	2,267	22	67
중앙보유	500	0	500	200	2	0	50	0	50
포장단위	1,500			100			100		

품 번	55. 특별조사구회수용상자			56. 특별조사구 접수대장			57. 전공분야 참고자료		
	수 량	**묶음**	**잔량(매)**	**수량**	**묶음**	**잔량(매)**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350	0	350	8,000	5		8,000	80	-
시도계							7,552	75	52
서 울							1,096	10	96
부 산							476	4	76
대 구							294	2	94
인 천							294	2	94
광 주							182	1	82
대 전							164	1	64
울 산							128	1	28
경 기							1,052	10	52
강 원							414	4	14
충 북							336	3	36
충 남							448	4	48
전 북							530	5	30
전 남							642	6	42
경 북							726	7	26
경 남							674	6	74
제 주							96	-	96
특별계	346	17	6	8,000	5				
외 교	3		3	300	1				
경 찰	35	1	15	1,200	1				
해 경	3		3	100	1				
법 무	40	2	-	300	1				
국 방	265	13	5	6,000	1				
중앙보유	4		4	100	1		448	4	48
포장단위	20			기관별로 포장			100		

품 번	58. 주요성씨의 본관분류부호					
	수 량	묶음	잔량(매)			
전 체	156,263	156	263			
시도계	153,813	153	813			
서 울	33,096	33	96			
부 산	11,693	11	693			
대 구	7,885	7	885			
인 천	7,427	7	427			
광 주	4,100	4	100			
대 전	4,262	4	262			
울 산	3,111	3	111			
경 기	26,864	26	864			
강 원	5,662	5	662			
충 북	5,162	5	162			
충 남	6,914	6	914			
전 북	7,010	7	10			
전 남	7,957	7	57			
경 북	10,411	10	11			
경 남	10,504	10	4			
제 주	1,755	1	55			
특별계						
외 교						
경 찰						
해 경						
법 무						
국 방						
중앙보유	2,450	24	50			
포장단위	1,000					

< 부 록 >

조사표류 배부 산출 근거

1. 행정구역, 조사구 수 및 조사요원 수

구분	행정구역		가구수	조사구수			조사요원			예비 조사원	지도원
	시군구①	읍면동		계	전수	표본	계	전수	표본		
전국	255 (234)	3,505	14,807,034	250,070	225,063	25,007	127,320	100,067	27,253	6,089	12,218
서울	25	522	3,295,646	55,261	49,735	5,526	28,238	22,611	5,627	1,364	2,745
부산	16	221	1,158,446	19,551	17,596	1,955	9,839	7,815	2,024	468	954
대구	8	138	787,608	13,303	11,973	1,330	6,676	5,263	1,413	327	649
인천	10	136	765,843	12,797	11,517	1,280	6,269	4,976	1,293	303	604
광주	5	85	419,236	7,094	6,385	709	3,428	2,662	766	166	327
대전	5	76	425,177	7,255	6,529	726	3,601	2,774	827	178	352
울산	5	58	316,813	5,338	4,804	534	2,622	2,058	564	129	252
경기	44 (31)	481	2,709,579	45,608	41,047	4,561	22,706	17,770	4,936	1,102	2,190
강원	18	188	502,170	8,598	7,738	860	4,476	3,491	985	213	416
충북	14 (12)	153	467,771	8,010	7,209	801	4,140	3,169	971	195	396
충남	16	207	614,364	10,462	9,416	1,046	5,548	4,276	1,272	267	522
전북	16 (14)	248	626,707	10,590	9,531	1,059	5,481	4,280	1,201	254	521
전남	22	298	688,035	11,607	10,446	1,161	6,172	4,838	1,334	289	571
경북	25 (23)	337	905,132	15,562	14,006	1,556	8,259	6,313	1,946	376	779
경남	22 (20)	314	968,903	16,376	14,738	1,638	8,422	6,620	1,802	389	804
제주	4	43	155,604	2,658	2,392	266	1,443	1,151	292	69	136

주) ① 시군구의 ( )는 일반구를 제외한 자치 시군구 수임

※ 본 자료는 표류 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2000. 6. 30 현재 기준)이므로 최종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내검요원 및 지도공무원수

구분	내검요원					지도공무원②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내검지도원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국	40,520	2,503	9,902	24,815	3,300	14275	255	3,505	10,515
서울	9,120	553	2,211	5,504	852	2,113	25	522	1,566
부산	3,201	196	782	1,940	283	900	16	221	663
대구	2,183	133	532	1,318	200	560	8	138	414
인천	2,098	128	511	1,272	187	554	10	136	408
광주	1,164	71	283	710	100	345	5	85	255
대전	1,189	73	291	720	105	309	5	76	228
울산	878	53	214	530	81	237	5	58	174
경기	7,485	456	1,826	4,536	667	1968	44	481	1443
강원	1,361	86	344	851	80	770	18	188	564
충북	1,281	80	321	789	91	626	14	153	459
충남	1,643	105	398	1,039	101	844	16	207	621
전북	1,592	106	344	1,048	94	1,008	16	248	744
전남	1,811	116	464	1,141	90	1,214	22	298	894
경북	2,469	156	622	1,536	155	1,373	25	337	1011
경남	2,619	164	653	1,619	183	1,278	22	314	942
제주	426	27	106	262	31	176	4	43	129

② 시도는 시군구별 1명, 시군구는 읍면동별 1명, 읍면동은 3명씩 지도공무원으로 동원

3. 특성별 조사구수

2000. 6. 30기준

시·도	가구수	특성별 조사구수						
			A	1	2	3	4	5
계	14,807,034	**250,070**	85,252	159,769	1,085	2,317	1,138	509
서울	3,295,646	55,261	16,228	38,611	-	225	90	107
부산	1,158,446	19,551	6,999	12,302	19	73	88	70
대구	787,608	13,303	4,953	8,168	-	100	49	33
인천	765,843	12,797	5,549	6,997	183	22	33	13
광주	419,236	7,094	3,581	3,406	-	55	36	16
대전	425,177	7,255	3,199	3,891	-	95	46	24
울산	316,813	5,338	2,373	2,898	-	51	9	7
경기	2,709,579	45,608	18,426	26,550	5	352	232	43
강원	502,170	8,598	2,673	5,712		126	68	19
충북	467,771	8,010	2,743	5,032		152	68	15
충남	614,364	10,462	2,693	7,431	30	229	61	18
전북	626,707	10,590	3,462	6,895	19	119	83	12
전남	688,035	11,607	2,634	8,047	697	134	84	11
경북	905,132	15,562	4,125	10,904		404	87	42
경남	968,903	16,376	5,273	10,709	104	167	82	41
제주	155,604	2,658	341	2,216	28	13	22	38

○ 일반가구 및 아파트가구수

		가 구 수	
		일 반 가 구	아 파 트 가 구
○ 가 구 수	14,807,034	9,691,914	5,115,120
- 전 수	13,326,304	8,722,704	4,603,600
- 표 본	1,480,730	969,210	511,520

23-3

200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조사구 실시계획

2000. 7

통 계 청

목 차

Ⅰ. 실시배경 2

Ⅱ. 2000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2

1. 조사개요 2

2. 금번 조사의 주요특징 3

Ⅲ. 특별조사구 실시계획 3

1. 조사실시 개요 3

2. 기본방향 4

3. 조직구성 4

4. 관계관 회의 개최 5

5. 조사준비 5

6. 실지조사 실시 및 지도 6

7. 조사표류의 제출 및 접수 6

8. 유공자 포상 6

Ⅳ. 행정사항 7

1. 자체계획의 수립 시행 협조 7

2. 소요예산 요구 산출의 적정 및 기일내 제출협조 7

<붙임1> 중앙부처별 조사대상 및 조사담당기관 8

<붙임2> 특별조사구 조사항목 비교 9

Ⅰ. 실시배경

○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구·가구 및 주택에 대해 매 5년마다 조사하는 대규모 국가기본통계조사임

○ 금년은 「2000 인구주택총조사」의 해로 2000. 11. 1.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일제히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그러나 일반공무원 및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재외공관, 군부대, 교도소 및 경찰서 등 특수시설에 상주하는 인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음

○ 특수시설을 관할하는 5개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부처별 협조아래 위탁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음

- 통계법 제4조 및 인구주택총조사 시행규칙 제9조(재경부령) 근거

○ 따라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성공적이고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실시하려는 것임

Ⅱ. 2000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1. 조사개요

○ 목 적

- 우리나라의 인구·가구 및 주택에 대한 규모, 구조 및 분포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통계의 기준자료로 활용 등

○ 조사기준시점 : 2000년 11월 1일 0시

○ 조 사 기 간 : 2000. 11. 1~11. 10(10일간)

○ 조 사 대 상 : 전국의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 사 체 계 : 통계청주관하에 전국 지방행정기관과 5개 중앙부처별 실시

○ 조 사 사 항 : 전수조사 20개항목(90%), 표본조사 50개항목(10%)

2. 금번 조사의 주요특징

○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가구 및 주택의 구조, 분포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경영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자료

○ 「2000 인구주택총조사」는 세기가 바뀌는 해에 실시되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조사

○ 21세기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 복지사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점 조사

- 지식기반사회 : 학력, 교육기간, 전공 등을 파악하여 국가지식지도(National Knowledge Map) 작성기반 조성
- 정보화 사회 : PC 보유현황, 컴퓨터·인터넷 활용상태,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등
- 복지사회 : 주거상태, 고령자 노후 후생실태, 아동보육실태 등

○ 조사결과의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자료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자동심사기법(Imputation) 및 PC 지방분산 입력방식 도입

- 잠정집계결과(2000. 12), 전수집계결과(2001. 9), 표본집계결과(2001. 12)

○ 이외 수치지도(Digital Map) 사용하여 조사지역 설정,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 작성방식 등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 도입

Ⅲ. 특별조사구 실시계획

1. 조사실시 개요

○ 조사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일반조사구와 동일)
- 조사기간 : 2000. 11. 1 ~ 11. 5(5일간)

○ 조사기관 :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 현재 특수시설에 상주하는(수감 또는 수용된) 사람

※ 중앙부처별 조사대상 및 조사단위 : <붙임1>

○ 조 사 체 계 : 중앙부처별로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을 통하여 조사

○ 조 사 방 법 : 조사대상자를 개별 면접조사
(단, 해외공관은 가구단위별로 자기 기입방식 조사)

○ 조 사 항 목 : 9개 항목

- 기 본 항 목 : 성씨, 본관, 성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출생지, 본가(국) 주소
- 특 성 항 목 : 가구주와 관계(외교통상부), 영외거주여부(국방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형의 확정여부(법무부)

○ 확 보 예 산 : 142,023천원

2. 기본방향

○ 부처별 실정에 맞는「200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체계적인 조사 실시

○ 통계청 실시본부와 중앙부처의 조사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구 관계관 회의」를 운영

○ 특별시설(특별조사구)의 조사실시와 관련된 예산은 통계청에서 적극 지원

○ 부처별 특성에 따른 조사업무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화 도모

- 조사표의 배부 및 접수 등을 부처별 실정에 맞게 운영

3. 조직구성

○ 설치기간 : 2000. 7 ~ 2000. 12

○ 구성원칙

- 실시본부 및 하부조직은 부처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
- 총조사 실시에 대한 해당부처의 소속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편성

4. 관계관 회의 개최

	제 1 차 회의	제 2 차 회의	제 3 차 회의
· 회의시기	2000. 7. 18예정	2000. 9. 15예정	2000. 11. 24예정
· 참석대상	담당과장 및 실무자	좌 동	좌 동
· 주요회의 내 용	- 사전 업무협의 - 실시계획 및 종합 시행계획 설명 - 예산관련 협의 - 기타 협조사항 등	- 조사표 작성 및 내검지침 교육 - 소요예산 산출 및 배정	- 조사표류 제출 및 조사결과 토의

※ 회의장소는 회의개최 상황에 따라 별도 지정 예정임

5. 조사준비

○ 조사담당자를 사전 지정 운영 (2000. 8 ~ 2000. 12)

-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조사담당자를 지정
- 조사담당자는 조사표의 수령, 교육훈련 등의 조사준비 업무 수행

○ 조사표류 수령 및 배부 관리 (2000. 8 ~ 2000. 9)

- 통계청 일정에 따라 배부하는 조사표류 수령, 보관 관리
  · 부처실정에 맞게 일괄 배부 또는 분산 배부 예정

- 조사표류 수령후 소속 단위기관별로 배부계획 수립

○ 조사담당자 교육훈련 실시 (2000. 10. 2~10. 20)

- 중앙부처 관계관 회의에서 담당과장 및 실무자 교육훈련 실시(2000. 9)
- 해당부처의 소속 단위기관 조사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 해당부처별 기관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본부(청) 소집 교육 또는 순회교육 실시(소속기관별 2명)
  · 소속기관의 전달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시하여 조사의 누락 및 왜곡 방지

※ 조사교육 내용은 별도 「특별조사구 조사지침서」를 작성, 배부 예정

6. 실지조사 실시 및 지도

○ 실지조사 실시 (2000. 11. 1 ~ 11. 5)

- 특별조사구의 조사단위별로 조사담당자가 직접 조사대상자 면접 조사 (단, 외교통상부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시점(2000. 11. 1. 0시)을 기준으로 조사의 누락 및 중복이 없이 실제 조사

○ 실지조사 지도 (2000. 11. 1 ~ 11. 5)

- 해당부처의 조사단위 상급기관에서 소속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지도
  · 탁상조사, 누락 및 중복, 조사착오 등 방지하여 조사의 정확성 제고

- 실지조사 지도반은 실지조사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 차기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7. 조사표류의 제출 및 접수

○ 해당부처의 조직체계에 따라 조사표 제출 및 접수 (2000. 11. 12~11. 19)

- 조사표 제출전 조사단위별로 조사내용 검토 및 부호기입(11. 6 ~ 11. 11)
- 상급기관에서 조사표 접수시에는 조사표류 및 조사내용 확인

○ 해당부처에서 통계청 제출 (2000. 11. 20~11. 22)

- 부처별 조사물량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제출
  · 해당부처의 1차 소속기관에서 직접 통계청 제출 등

8. 유공자 포상

○ 해당부처의 조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총조사 유공자 포상 (2001. 4)

○ 특별조사구의 유공자 포상예정

- 포상인원 : 70명 내외('95년 포상대비 1.5배 수준)
- 포상훈격 : 대통령 1인, 국무총리 2인, 재경부장관 68인

Ⅳ. 행정사항

1. 자체계획의 수립 시행 협조

○ 「2000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하여 부처별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실시 협조

○ 자체계획 수립시에는 통계청의 종합시행계획 및 특별조사구 실시계획을 참조

2. 소요예산 요구 산출의 적정 및 기일내 제출 협조

○ 해당부처별로 소요되는 예산은 조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산출

- 지원예산이 조사여비로 계상되어 다른 비목은 지원이 곤란

○ 예산요구 기일내 제출하여 조기 예산 배정으로 원활한 조사 수행

< 붙임1 >

중앙부처별 조사대상 및 조사담당기관

부처명	조 사 대 상	조사담당기관(조사구설정기관)	비 고
외 교 통 상 부	재외공관에 소속된 공관원 및 그 가족 - 주재관, 무관 - 국정원 등 각 부처 파견관	· 재외공관	
국 방 부	- 모든군인 -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 제3사관학교 생도 - 간호사관학교 생도	· 중대, 학교, 함정 등	
법 무 부	- 치료감호소·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교도소·구치소·감호소의 수감자 - 경비교도 - 외국인보호소·출입국사무소의 보호외국인	·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 경비교도대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경 찰 청	- 전투경찰순경 - 경찰대학교 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경찰서 유치인, 대용감방수용자	· 전경중대, 기동중대, 방범순찰대 등 · 학교 · 지방경찰청	
해 양 경 찰 청	- 전투경찰순경 - 해양경찰서 유치인	·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청	

※ 세부적인 조사대상 및 조사단위는 조사지침서에서 별도설명 예정임

< 붙임 2 >

특별조사구 조사항목 비교

일반조사구 전수조사항목 (20개항목)	특 별 조 사 구 조 사 항 목		
	재외공관용(9개항목)	군·전경대용(9개항목)	교도소용(9개항목)
□ 인구에 관한 항목 (8개 항목) ① 성씨 ② 본관 ③ 가구주와의 관계 ④ 성별 ⑤ 나이 ⑥ 교육정도 ⑦ 혼인상태 ⑧ 출생지 □ 가구에 관한 항목 (7개 항목) ① 가구구분 ② 사용방수 ③ 주거시설형태 ④ 점유형태 ⑤ 거처의 종류 ⑥ 단독주택의 종류 ⑦ 대표가구여부 □ 주택에 관한 항목 (5개 항목) ① 연건평 ② 대지면적 ③ 총방수 ④ 건축년도 ⑤ 편익시설수	① 성씨 ② 본관 ③ 가구주와의 관계 ④ 성별 ⑤ 나이 ⑥ 교육정도 ⑦ 혼인상태 ⑧ 출생지 ⑨ 본국의 주소	① 성씨 ② 본관 ③ 성별 ④ 나이 ⑤ 교육정도 ⑥ 혼인상태 ⑦ 영외거주여부 ⑧ 출생지 ⑨ 본가의 주소	① 성씨 ② 본관 ③ 성별 ④ 나이 ⑤ 교육정도 ⑥ 혼인상태 ⑦ 형의확정여부 ⑧ 출생지 ⑨ 본가의 주소